

# 도보

선 람	기관의 장

제2548호 2009년 2월 06일(금)

## 조 례

- 충청북도조례 제3128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3
- 충청북도조례 제3129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6
- 충청북도조례 제3130호 충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55
- 충청북도조례 제3131호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61
- 충청북도조례 제3132호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64
- 충청북도조례 제3133호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66

## 훈 령

- 충청북도훈령 제1275호 충청북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68
- 충청북도훈령 제1276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일부개정규정.....70

## 고 시

- 충청북도고시 제2009-22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고시.....75
- 충청북도고시 제2009-23호 산림법인 등록 고시.....76
- 충청북도고시 제2009-24호 산림법인 등록 고시.....77
- 충청북도고시 제2009-25호 산림법인 등록 고시.....78

## 공 고

- 충청북도공고 제2009-61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공고.....79
- 충청북도공고 제2009-66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80
- 충청북도공고 제2009-67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81
- 충청북도공고 제2009-68호 부동산개발업등록 취소 공고.....82

☞ 뒤쪽 이어서

회 람									
--------	--	--	--	--	--	--	--	--	--

**공 고**

- 충청북도공고 제2009-71호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변경공고.....83
- 충청북도공고 제2009-72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공고.....84

**시군행정**

**△ 고 시**

- 청주시고시 제2009-13호 청주 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85
- 충주시고시 제2009-10호 충주도시계획 지형도면승인 고시(K-M그린CC).....99
- 청원군고시 제2009-7호 장남도로(군도23호) 선형개량공사 편입토지 세목고시.....100
- 청원군고시 제2009-8호 청원내수 관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102
- 보은군고시 제2009-12호 보은 관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고시...106
- 보은군고시 제2009-13호 보은 관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108
- 진천군고시 제2009-6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109

**△ 공 고**

- 청주시공고 제2009-168호 등록공인 공고.....116
- 청주시공고 제2009-19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117
- 청주시공고 제2009-19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119
- 청주시공고 제2009-19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123
- 충주시공고 제2009-15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제피로스컨트리클럽진입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212
- 충주시공고 제2009-165호 충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열람공고...217
- 청원군공고 제2009-144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219
- 청원군공고 제2009-157호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223
- 증평군공고 제2009-62호 공인 등록 공고.....224

**기 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0호 금강수계 소옥지구 하천정비공사 고시...225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33호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228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09-3호 공인폐기 공고.....230
-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09-52호 자치법규 입법예고.....231
-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09-1호 충북개발공사 관인 공고.....233
- 청송군 공고 제2009-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공고.....234

조 례

충청북도 조례 제3128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6일

충청북도 교육감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월 1,850,000원” 을 “월 2,180,000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월 1,850,000원으로 한다. 단,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생략)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 2,180,000원..... .....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 장 부 의 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의 장 부 의 장	현행 과 같음						
위 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위 원	현행 과 같음						
비고 : 1. (생략) 2. (생략) 3. (신설)								비고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의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북도교육위원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1,850,000원에서 월 2,180,000원으로 함. (안 제3조제1항)
- 별표 1(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비고란의 제3호 규정을 신설함.

## 충청북도 조례 제3129호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6일

충청북도 교육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 허가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와 대부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나.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 허가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 허가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와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② 제1항의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과장급 이상 담당관 포함)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재산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육청에서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으로 교육장과 각 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각 국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각 업무담당장학사(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심의회는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과 재산업무담당주사(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재산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4.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 나. 시·군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5. 원상변경 여부
- 6.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 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라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합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국가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연수·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 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⑤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그 밖에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 ⑧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 1.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24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 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 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과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25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제1절(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장 잡종재산

##### 제1절 대부

제26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축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도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8.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분이나 사용료의 효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가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분료의 효율은 해당 폐교재산평가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3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①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분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의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결정하는 건물과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분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text{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분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times \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과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500

2. 소득중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0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재산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할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나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금액 조정하는 금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제3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4장제2절(제40조부터 제4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절 매각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나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제3절(제4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절 신탁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잠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과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장 청사관리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및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과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7장(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장 관사관리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란 교육감 관사를 말한다.
2. "2급 관사"란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와 이에 준하는 관사를 말한다.
3. "3급 관사"란 1급·2급 관사 이외의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를 말한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과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과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 통신시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 3.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보일러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함)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2.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3.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 1. 관사의 시설장비와 물품현황
-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장 보칙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상: 6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1년 4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2년 분납
4. 300만원 이상: 3년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개정 규정에 따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시설별		기준			비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		5,000원	10,000원	15,000원	1실 당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 포함)	보통교실		2,500원	5,000원	10,000원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 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총 칙</b></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본청</u>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li> <li>2. <u>제1관서</u> :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li> <li>3. <u>교육청</u>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li> <li>4. <u>제2관서</u> :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li> <li>5. <u>관서의 장</u>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li> </ol> <p>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본청</u>"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li> <li>2. "<u>제1관서</u>"란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li> <li>3. "<u>교육청</u>"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li> <li>4. "<u>제2관서</u>"란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li> <li>5. "<u>관서의 장</u>"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li> </ol> <p>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u>당해</u>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u>당해</u>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③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u>당해</u>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p> <p>④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u>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u>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u>해당</u>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u>해당</u>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u>해당</u>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p> <p>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u>따른</u>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u>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u>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4조(위임사무) ①교육감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p> <p>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p> <p>가. <u>당해</u>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p> <p>나. <u>당해</u>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p> <p>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p> <p>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p> <p>나.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p> <p>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p> <p>라. 교육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p> <p>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p> <p>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p> <p>가. <u>당해</u>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p> <p>나. <u>당해</u>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p>	<p>제4조(위임 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p> <p>가. <u>해당</u>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p> <p>나. <u>해당</u>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와 대부</p> <p>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p> <p>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p> <p>나.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p> <p>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p> <p>라. 교육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p> <p>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p> <p>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p> <p>가. <u>해당</u>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p> <p>나. <u>해당</u>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와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p>

현행	개정안
<p>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② 제1항 규정의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의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과장급 이상 담당관 포함)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li> <li>2.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li> <li>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u>학교운영지원과 세입관재담당사무관이</u>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li> </ol> <p>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교육청에서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의회의 위원은 교육장과 각 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각 국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각 업무담당 장학사(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li> <li>2.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이 된다.</li> <li>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과 재산업무 담당주사(단, 청주교육청은 재</li> </ol>	<p>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② 제1항의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의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과장급 이상 담당관 포함)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li> <li>2.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li> <li>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u>재무과 재산업무담당사무관이</u>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li> </ol> <p>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교육청에서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의회의 위원은 교육장과 각 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각 국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각 업무담당 장학사(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li> <li>2.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이 된다.</li> <li>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과 재산업무담당주사(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재산업무담당주사)가</li> </ol>

현행	개정안
<p>무과 재산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p>4.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의 업무) ①공유재산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p> <p>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p> <p>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p> <p>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p> <p>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p> <p>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p> <p>나. 시·군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p> <p>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p> <p>4. 그 밖에 심의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의 업무) ① 공유재산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lt;삭제&gt;</p> <p>2.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p> <p>3. 잡종재산의 용도변경</p> <p>4.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p> <p>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p> <p>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p> <p>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p> <p>나. 시·군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p> <p>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안
<p>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p>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li> <li>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li> <li>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li> <li>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li> <li>5. 원상변경 여부</li> <li>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li> <li>7. 기타 필요한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li> <li>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li> <li>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li> <li>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li> <li>5. 원상변경 여부</li> <li>6.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li> <li>7. 그 밖의 필요한 사항</li> </ol>
<p>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li> <li>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li> <li>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li> <li>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li> <li>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li> </ol>	<p>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li> <li>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li> <li>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li> <li>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li> <li>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li> </ol>
<p>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p>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p>	<p>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p>

현행	개정안
<p>재산조성비에 <u>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재산조성비에 <u>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u>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u></p>	<p>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u>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u></p>
<p><b>제 2 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b></p>	<p><b>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b></p>
<p>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u>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u>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u>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u>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u>받아야</u> 한다.</p>
<p>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u>따르지</u>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u>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u>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u>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u>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u>제13조의 규정</u>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u>제13조에 따른</u>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u>토지위에</u>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u>부속토지에</u>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p>	<p>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u>토지</u>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u>부속토지</u>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p>
<p>제18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u>제17조의 규정</u>에 의하되 그 기간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p>	<p>제18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u>제17조에 따라</u> 그 기간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p>
<p><b>제 3 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b></p>	<p><b>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b></p>
<p>제19조(관리 및 처분) <u>재산관리책임 공무원</u>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9조(관리 및 처분) <u>재산관리공무원</u>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del>을</del>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u>당해</u>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p>	<p>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del>을</del>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u>해당</u>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u>각 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p>

현행	개정안
<p>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목적</li> <li>2. 사용기간</li> <li>3. 사용료</li> <li>4. 사용료 납부방법</li> <li>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li> <li>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li> <li>7. 허가조건</li> <li>8. 기타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사항</li> </ol>	<p>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목적</li> <li>2. 사용기간</li> <li>3. 사용료</li> <li>4. 사용료 납부방법</li> <li>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li> <li>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li> <li>7. 허가조건</li> <li>8. <u>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u>한 사항</li> </ol>
<p>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u>개인 또는 단체에게</u>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u>이조에서 "사용료"라 한다</u>)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④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국가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⑤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p>	<p>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u>개인이나 단체에게</u>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에 따라</u>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u>이조에서 "사용료"라 한다</u>)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④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국가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연수·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⑤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p>

현행	개정안
<p>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⑥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li> <li>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기타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으로써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⑦㉒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li> <li>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li> <li>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li> </ol> <p>⑧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이하 이조에서 "허가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u>변상 또는 원상복구</u> 하여야 한다.</li> <li>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u>사고 또는 손해</u>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li> </ol>	<p>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p> <p>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li> <li>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u>그밖에</u>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으로써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li> <li>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li> <li>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li> </ol> <p>⑧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 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자가 <u>고의나</u>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가 이를 <u>변상하거나</u>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li> <li>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u>사고나</u>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li> </ol>

현행	개정안
<p>제24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p> <p>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p>	<p>제24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 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 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과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p>
<p>제25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p>	<p>제25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p>

현 행	개 정 안
<p>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u>제26조 내지 제37조</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u>제26조부터 제37조까지</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잡종재산</b> <b>제 1 절    대 부</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잡종재산</b> <b>제1절 대부</b></p>
<p>제26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u>대부기간중의 사용권</u>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p>	<p>제26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u>대부기간 중의 사용권</u>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p>
<p>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u>법 제35조의 규정</u>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u>환수 및 기타</u>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u>국가기관 또는</u>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u>당해</u>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p>	<p>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u>법 제35조에 따라</u>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u>환수와 그 밖의</u>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u>국가기관이나</u>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u>해당</u>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p>
<p>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u>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u>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p>	<p>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u>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u>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li> <li>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li> <li>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li> <li>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투자지역의 공유재산</li> <li>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li> <li>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li> </ol>	<p>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li> <li>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li> <li>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li> <li>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li> <li>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li> <li>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li> </ol>
<p>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p>	<p>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가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p>

현행	개정안
<p>추가하여 징수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40이상</u>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li> <li>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li> </ol> <p>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25 이상</u>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li> <li>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li> <li>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li> <li>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li> <li>5. <u>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율은 연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u></li> </ol> <p>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10이상</u>으로 할 수 있다.</p> <p>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10이상</u>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li> <li>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li> <li>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도가 설</li> </ol>	<p>여 징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40 이상</u>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li> <li>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li> </ol>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25 이상</u>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li> <li>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li> <li>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li> <li>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li> <li>5. <u>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u>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10 이상</u>으로 할 수 있다.</li> </ol>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10 이상</u>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li> <li>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li> <li>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도가 설</li> </ol>

현행	개정안
<p>림·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p> <p>4.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p> <p>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p> <p>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p> <p>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p> <p>8.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p> <p>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p> <p>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의 규</p>	<p>림·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p> <p>4.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p> <p>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p> <p>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p> <p>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p> <p>8.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나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p> <p>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료의 요율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p>

현행	개정안
<p>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원석시가를 합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원석시가를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p> <p>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p>	<p>제33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①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p> <p>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p> <p>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p>	<p>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의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결정하는 건물과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p> <p>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과 영 제35</p>

현행	개정안
<p><u>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u>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u> 하는 경우에 <u>대부료 또는 사용료</u>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p>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u>재정경제부장관</u>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p> <p>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p> <p>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p> <p>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u>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u></p> <p>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p> <p>바. <u>가목 내지 마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사. <u>가목 내지 마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p> <p>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p>	<p><u>조제2항에 따라</u>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u>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u> 하는 경우에 <u>대부료나 사용료</u>(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p>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u>기획재정부장관</u>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p> <p>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p> <p>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p> <p>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u>국내부품과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u></p> <p>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p> <p>바. <u>가목부터 마목까지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사. <u>가목부터 마목까지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p> <p>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p>

현 행	개 정 안
<p>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p>	<p>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p>
<p>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u>가목 내지 라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마. <u>가목부터 라목까지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바. <u>가목 내지 라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바. <u>가목부터 라목까지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p>	<p>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p>
<p>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p>	<p>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p>
<p>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u>가목 내지 라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마. <u>가목부터 라목까지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바. <u>가목 내지 라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바. <u>가목부터 라목까지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사. <u>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의</u>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p>	<p>사. <u>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u>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p>
<p>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p>	<p>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p>

현 행	개 정 안
<p>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500</li> <li>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0</li> </ol> <p>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li> <li>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li> </ol> <p>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lt;신설&gt;</p> <p>① 전세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p> <p>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p>	<p>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500</li> <li>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0</li> </ol> <p>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li> <li>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li> </ol> <p>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li> <li>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li> <li>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li> <li>4. 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재산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li> </ol> <p>② 전세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p> <p>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p>

현행	개정안
<p>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p>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지목 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p> <p>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p> <p>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p>	<p>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나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p>	<p>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제3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p>

현행	개정안
<p>할 수 있다.</p> <p>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li> <li>2. 대부계약 년월일</li> <li>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li> <li>4. 대부기간</li> <li>5. 재산가격</li> <li>6. 대부요율</li> <li>7. 대부료</li> <li>8. 대부료 납입기일</li> <li>9. 계약 갱신내용</li> <li>10. 기타 필요한 사항</li> </ol>	<p>수 있다.</p> <p>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li> <li>2. 대부계약 연월일</li> <li>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li> <li>4. 대부기간</li> <li>5. 재산가격</li> <li>6. 대부요율</li> <li>7. 대부료</li> <li>8. 대부료 납입기일</li> <li>9. 계약 갱신내용</li> <li>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li> </ol>
<p>제 2 절 매 각</p>	<p>제2절 매각</p>
<p>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li> <li>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시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li> <li>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li> </ol>	<p>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집중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li> <li>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시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li> <li>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나 저소득층에게 4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li> </ol>

현 행	개 정 안
<p>특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u>공영주택</u>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li> <li>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li> <li>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li> <li>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li> </ol> <p>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p>	<p>매</p> <p>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li> <li>2.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li> <li>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li> <li>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li> </ol> <p>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p>

현행	개정안
<p>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삭제)</p>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p> <p>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p> <p>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p>	<p>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lt;삭제&gt;</p> <p>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p> <p>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p>

현행	개정안
<p>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p> <p>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p>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p> <p>4.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신탁</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절 신탁</b></p>
<p>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5 장 공유임야 관리</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공유임야 관리</b></p>
<p>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p>	<p>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과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6 장 청사관리</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청사관리</b></p>
<p>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p>	<p>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및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p>

현행	개정안
<p>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피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p> <p>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li> <li>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li> <li>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li> <li>4. <u>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u></li> <li>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li> <li>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li> <li>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 구역을 설정</li> </ol>	<p>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피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p> <p>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li> <li>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li> <li>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li> <li>4. <u>충무시설과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u></li> <li>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li> <li>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li> <li>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 구역을 설정</li> </ol>
<p>제 7 장 관사관리</p>	<p>제7장 관사관리</p>
<p>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p>	<p>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p>
<p>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급 관사: 교육감 관사</li> <li>2. 2급 관사: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li> </ol>	<p>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급 관사”란 교육감 관사를 말한다.</li> <li>2. “2급 관사”란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와 이에 준하는 관사를 말한다.</li> </ol>

현 행	개 정 안
<p>3. <u>3급 관사: 1급 및 2급 관사 이외의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u></p> <p>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u>의하여</u> 당해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p> <p>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li> <li>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li> <li>3. 청결유지</li> <li>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li> <li>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u>시설 또는</u>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li> </ol> <p>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당해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li> <li>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li> <li>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li> <li>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li> </ol> <p>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u>공작물 및</u>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기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li> <li>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li> </ol>	<p>3. "<u>3급 관사</u>"란 1급·2급 관사 이외의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를 말한다.</p> <p>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u>따라 해당</u>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p> <p>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재산과</u> 시설의 훼손방지</li> <li>2. 비품의 <u>망실과</u> 훼손방지</li> <li>3. 청결유지</li> <li>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li> <li>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u>시설이나</u>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li> </ol> <p>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li> <li>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li> <li>3. 사용자가 제52조에 <u>따른</u>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li> <li>4. <u>그 밖에</u>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li> </ol> <p>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u>공작물과</u>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기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li> <li>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 관리비</li> </ol>

현행	개정안
<p>유지 관리비</p> <p>3.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보일러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함)</p> <p>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li> <li>2.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li> <li>3.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li> </ol> <p>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p> <p>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li> <li>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li> <li>3. 기타 필요한 사항</li> </ol> <p>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p>	<p>3.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보일러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함)</p> <p>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li> <li>2.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li> <li>3.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li> </ol> <p>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p> <p>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사의 시설장비와 물품현황</li> <li>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li> <li>3. 그 밖의 필요한 사항</li> </ol> <p>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p>

현행	개정안
<p>변상한다.</p>	<p>변상한다.</p>
<p>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치주택에 대하여는 <u>제49조 내지 제59조의</u>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치주택에 대하여는 <u>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u>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8 장 보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8장 보칙</b></p>
<p>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u>제81조제1항의</u>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u>규칙이</u>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u>규칙이</u>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u>제81조제1항에</u> 따른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u>해당</u> 점유자에게 <u>규칙으로</u>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u>규칙으로</u>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u>제81조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0만원 이상 : 6월 2회 분납</li> <li>2. 1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li> <li>3. 200만원 이상 : 2년 분납</li> <li>4. 300만원 이상 : 3년 분납</li> </ol> <p>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u>제81조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u>규칙이</u>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u>제81조제1항에</u>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0만원 이상 : 6개월 2회 분납</li> <li>2. 1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li> <li>3. 200만원 이상 : 2년 분납</li> <li>4. 300만원 이상 : 3년 분납</li> </ol> <p>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u>제81조제1항에</u>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u>규칙으로</u>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u>제84조제2항에</u>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관인을 <u>도용 또는</u> 위조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재산</li> <li>나. <u>기타</u>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li> </ul> </li> </ol>	<p>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u>제84조제2항에</u>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u>다음 각 호와</u>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관인을 <u>도용하거나</u> 위조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재산</li> <li>나. <u>그 밖에</u>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li> </ul> </li> </ol>

현 행	개 정 안
<p>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u>기타재산을</u>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p> <p>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p> <p>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p>	<p>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u>그 밖의 재산을</u>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p> <p>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p> <p>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u>아니</u> 된다.</p>
<p>제64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u>토지</u>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u>당해</u>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64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u>토지나</u>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u>해당</u>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u>소유지분에 의하여</u>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u>당해</u> 토지의 <u>형상</u>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u>당해</u>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p>	<p>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u>소유지분에 따라</u>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u>해당</u> 토지의 <u>형상과</u>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u>해당</u>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p>

[별 표]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현 재						개 정 안						
[별표]						[별표]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시설별	기 준			비고	지역별	시설별	기 준			비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사지역	보통교실	5,000원	10,000원	15,000원	1실 당	보통교실	5,000원	10,000원	15,000원	1실 당		
	체육관 (강당)	일시 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체육관 (강당)	일시 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운동장	일시사 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운동장	일시사 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군지역 (사지역 의 읍·면 포함)	보통교실	2,500원	5,000원	10,000원	1실 당	보통교실	2,500원	5,000원	10,000원	1실 당		
	체육관 (강당)	일시 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체육관 (강당)	일시 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운동장	일시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운동장	일시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으로 재산판리관이 정하 여 장수할 수 있음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으로 재산판리관이 정하 여 장수할 수 있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 4. 18.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 의 확정 사항' 삭제(안 제6조제1항제2호)
- 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 산정 시 제한규정 삭제(안 제30조제3항제5호)
- 다.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 시 감액하는 비율을 확대(안 제36조)
- 라.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 (안 제41조제3호)
- 마.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 보완 (안 제35조제1항)
- 바. 기타 인용법률 및 직제개정으로 보완

충청북도 조례 제3130호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설치) 충청북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 중 "별표 1 내지 별표 6"을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로 한다.

제3조 중 "관리운영 기타"를 "관리·운영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의 서원고등학교의 위치란중 "1579번지"를 "1580번지"로, 진천농공고등학교의 명칭란중 "진천농공고등학교"를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3의 영동중학교의 위치란중 "69-1번지"를 "78번지"로, 상촌중학교의 위치란중 "467번지"를 "467-3번지"로하고,

성화중학교란 다음에 서현중학교란, 용성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서현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006번지
용성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388-1번지

옥산중학교란 다음에 오송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오송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택지개발지구 65BL
-------	-------------------------------

충주중앙중학교가금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4의 서현초등학교의 위치란중 "강서1지구 70BL"를 "1917번지"로, 충주금릉초등학교의 위치란중 "31번지"를 "31-5번지"로, 이수초등학교의 위치란중 "485번지"를 485-1번지"로, 부용초등학교의 위치란중 "225번지"를 "224번지"로, 매곡초등학교의 위치란중 "54번지"를 "53-1번지"로, 심천초등학교의 위치란중 "528번지"를 "524-1번지"로, 초강초등학교의 위치란중 "459번지"를 451-1번지"로, 가곡초등학교의 위치란중 "467번지"를 "435번지"로하고, 성화초등학교란 다음에 직지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직지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8-1번지
--------	--------------------------

엄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란, 청성초등학교능월분교장란, 칠성초등학교외사분교장란, 영춘초등학교의풍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6의 서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강서1지구 70BL"를 "1917번지"로, 충주금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31번지"를 "31-5번지"로, 이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485번지"를 "485-1번지"로, 부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225번지"를 "224번지"로, 매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54번지"를 "53-1번지"로, 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528번지"를 "524-1번지"로, 초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459번지"를 "451-1번지"로, 가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467번지"를 "435번지"로 하고, 서원유치원란 다음에 산남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산남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75번지
-------	------------------------

성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직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직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8-1번지
-------------	--------------------------

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셋별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엄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병설유치원란, 청성초등학교능월분교장병설유치원란, 칠성초등학교외사분교장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1조(설치) 충청북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u>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u> 를 설치한다.	제1조(설치) 충청북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u>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u> 을 설치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 ..... <u>별표 1 내지 별표 6와</u> .....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 ..... <u>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u> .....
제3조(시행규칙) ..... <u>관리운영 기타</u> .....	제3조(시행규칙) ..... <u>관리·운영과 그밖에</u> .....

[별표 1]

#### 고등학교

현행		개정안	
명칭	위치	명칭	위치
서원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79번지	.....	..... 1580번지
진천농공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66번지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	.....

[별표 3]

#### 중학교

현행		개정안	
명칭	위치	명칭	위치
성화중학교	(생략)	.....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서현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006번지
<신설>	<신설>	용성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388-1번지
옥산중학교	(생략)	.....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오송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택지개발지구 65BL
충주중앙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361-7번지	<삭제>	<삭제>
가금분교장	.....	.....	..... 78번지
영동중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1번지	.....	..... 467-3번지
상촌중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467번지	.....	.....

[별표 4]

초등학교

현		개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서현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서1지구 70BL	.....	..... 1917번지
충주금릉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31번지	.....	..... 31-5번지
성화초등학교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직지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81번지
엄정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111번지	<삭 제>	<삭 제>
목계분교장			
청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	<삭 제>	<삭 제>
능월분교장			
이수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번지	.....	..... 485-1번지
부용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번지	.....	..... 224번지
매곡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4번지	.....	..... 53-1번지
심천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8번지	.....	..... 524-1번지
초강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9번지	.....	..... 451-1번지
칠성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번지	<삭 제>	<삭 제>
외사분교장			
가곡초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	..... 435번지
영춘초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760번지	<삭 제>	<삭 제>
의풍분교장			

[별표 6]

유치원

현		개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서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서1지구 70BL	.....	..... 1917번지
서원유치원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산남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75번지
성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직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81번지
산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73번지	<삭 제>	<삭 제>

현		개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셋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1095번지	<삭 제>	<삭 제>
충주금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31번지	.....	..... 31-5번지
엄정초등학교 목계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111번지	<삭 제>	<삭 제>
청성초등학교 능월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	<삭 제>	<삭 제>
이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번지	.....	..... 485-1번지
부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번지	.....	..... 224번지
매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4번지	.....	..... 53-1번지
심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8번지	.....	..... 524-1번지
초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9번지	.....	..... 451-1번지
칠성초등학교 의사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의사리 152번지	<삭 제>	<삭 제>
가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	..... 435번지

##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2009학년도 유치원·초·중학교 신설,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학교 명칭 변경, 초·중 통합 운영과 지번 변경으로 인한 주소 변경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폐지와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지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2009학년도 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및 중학교 3개교 신설
- 나. 전문계 고등학교 교명 변경
- 다. 학교 주소 변경
- 라.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분교장병설유치원 3개교 폐지

충청북도조례 제3131호

###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6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제6항 및 제37조에 따른 충청북도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3.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의 취소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관리실장이 된다.
- 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하는 공무원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담당관)이 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폐지)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한다.

□ 제개정 사유

- 실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1995년 위원회 구성 이후 개최실적이 전무한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제개정 내용

- 위원회 관련 법령 정비 및 추가 (제1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 주요사업 투자심사
  -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기능에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심의사항 추가 (제2조 제2항)
-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부위원장 임무 (제3조 ~ 제5조)
- 회의, 안건배부, 실무위원회, 의견청취 등 (제6조 ~ 제9조)
-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 (부칙 제2조)

충청북도조례 제3132호

##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6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제4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위원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팀장"을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하고 "건축팀"을 "건축디자인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5인이상 10인"을 "5명이상 10명"으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76조의2"를 "법 제8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제2항 중 "건축팀장"을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7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법 제76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법 제76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7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3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건축법」 제76조의3제3항”을 “「건축법」 제9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건축법」 제76조의6”을 “「건축법」 제93조”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건축법」 제76조의4”을 “「건축법」 제95조”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건축법」 제76조의3”을 “「건축법」 제96조”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건축법」 제76조의5”을 “「건축법」 제9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 사유**

- 「건축법」 개정(2008. 3. 21, 법률 제8974호)과 건축법시행령 개정(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으로 법률조문 개정과 건축위원회 인원 증원 및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제개정 내용**

- 건축위원회 구성(제4조)
  - 건축위원회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증원하여 건축과 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위원회 심의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함.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법률조문 개정(제23조, 제25조)
  - 건축법개정으로 법률조문 개정
- 위원회, 소위원회, 간사 및 서기 등의 인원의 표기 조문 개정(제4조, 제8조, 제11조, 제19조, 제22조)
  - “인” 을 “명”으로 개정
- 직제개편으로 조문 개정(제8조, 제22조)
  - 직제개편으로 건축팀을 건축디자인과로 명칭 변경

## 충청북도조례 제3133호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6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및 「농촌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①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제2조에서 정한 단체 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제3항 후단의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을 “제10조제2항의 수익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조에서 정한 단체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중에서 호선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농업기술원장, 기술지원부장, 지원기획과장, 충청북도 농정국의 농업정책과장, 농산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위원장 추천 6명 이내,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충청북도 농정국장 추천 2명 이내, 충청북도의회 추천 2명 이내

제5조제4항 중 “농업진흥과 업무담당팀장”을 “지원기획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원장은”을 “농업기술원장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기금운용관은 기술지원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원기획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원장은”을 “농업기술원장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 제개정 사유**

-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운영상 제기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제개정 내용**

- 관련법의 조문명확화(제1조)
- 기금의 일부 관리 주체 현실화 및 존속기한 명시(제3조)
- 지원 기금운용 관련 일부 자구 수정(제4조)
- 위원회 구성 명확화, 위촉직 위원의 추천 주체 및 추천인원수 명확화(제5조)
-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직위 명칭변경(제5조, 제13조)
- 기금관리 계획 및 결산주체의 명확화(제11조, 제14조)

**훈 령**

충청북도훈령 제 1275 호

**충청북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년 2월 6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제5조 제3항 관련)**

구 분	계	행정 보조원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청 원 경 찰			비고
			계	시설물 관 리	현장 작업	현장 지도	단순 조무		계	경비 원	산림 보호	
<b>총 계</b>	<b>216</b>	<b>10</b>	61	11	26	2	22	95	50	46	4	
의 회	2		2				2					
본 청	소 계	47	1	16	4	2	10		30	30		
	공 보 관	3		3	1		2					
	총 무 과	38		8	3		5		30	30		
	자치행정과	5	1	4		2	2					
	도 로 과	1		1			1					
직 속 기 관	소 계	35		29	3	19	7		6	6		
	충북도립대학	3							3	3		
	자치연수원	3							3	3		
	계	23		23	2	19	2					
	행정지원과	2		2	1		1					
	식량자원연구과	3		3		3						
	원예생명연구과	3		3		3						
	친환경농업연구과	4		4		4						
	지원기획과	1		1	1							
	기술보급과	1		1			1					
	포도연구소	1		1		1						
	채소연구소	3		3		3						
	시설농업연구소	2		2		2						
	잠사시험장	3		3		3						
	보건환경연구원	2		2	1			1				
소방서 (제천증평음성영동)	4		4				4					
사 업 소	소 계	132	9	14	4	5	2	3	95	14	10	4
	도로관리사업소	96		1	1				95			
	산림환경연구소	10		4		1	2	1		6	3	3
	축산위생연구소	2		2		2						
	청남대관리사업소	13		5	1	2		2		8	7	1
	여성발전센터	11	9	2	2							

충청북도훈령 제 1276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년 2월 6일

충 청 북 도 지 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8]

**본청에 두는 팀 명칭 (제5조 제4항 관련)**

부 서 명	명 칭	비고
공 보 관	홍보기획, 언론홍보, 홍보마케팅, 출판홍보	
감 사 관	감사, 회계감사, 기술감사, 조사, 공직윤리	
정 책 관 리 실	정책기획관	기획, 의회협력, 정책관리, 인재양성
	예산담당관	예산, 재정지원, 투자심사, 공기업
	성과관리담당관	평가, 창의, 성과,
	법무통계담당관	법제, 송무, 통계
	정보화담당관	정보기획, 행정정보, 정보진흥, 인터넷, 정보통신, 보안관제센터
행 정 국	총 무 과	총무, 인사, 교육고시, 단체후생, 기록정보, 민원
	자치행정과	행정, 조직관리, 자치지원, 민간협력, 자원봉사
	세 정 과	세정, 세입관리, 세무지도, 과표
	회 계 과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시설, 계약심사
	민방위비상대책과	민방위, 경보, 노근리사건지원, 역사규명
경 제 통 상 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 소비생활, 시장개선, 고용지원
	투자유치과	투자정책, 기업유치, 외자유치, 산업입지
	전략산업과	산업정책, 지식산업, 바이오산업, 과학진흥
	국제통상과	국제기획, 수출지원, 국제교류
	기업지원과	기업지원, 경영지원, 노사협력
	자원관리과	산업자원, 에너지관리, 품질관리
균 형 발 달 국	균형정책과	균형정책, 지역발전, 도시계획
	지역개발과	지역개발, 도시개발, 도시관리
	바이오사업과	바이오총괄, 기관유치, 시설관리, 바이오코리아, 한방엑스포
	교통물류과	교통정책, 대중교통, 교통관리

부 서 명		명 칭	비고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 도시경관, 주택관리	
건설방재국	도 로 과	건설행정, 도로계획, 도로시설, 도로관리	
	하 천 과	하천행정, 하천시설, 하천정비, 안전점검	
	재난관리과	재난행정, 재해대책, 복구지원	
	기반건설과	이전기획, 행정지원, 시설지원, 단지관리, 단지조성	
	토지정보과	토지행정, 지적관리, 토지정보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경영지원, 농촌환경개선, 농지관리, 농업협력	
	농산지원과	농산지원, 식량작물, 친환경농업, 농업기반조성	
	원예유통식품과	유통관리, 가공수출, 식품산업, 원예특작, 양정	
	축 산 과	축산경영, 축산유통, 축산위생, 가축방역, 수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 산림보호, 녹지조성, 산지관리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 기초생활보장,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소년	
	여성가족과	여성기획, 여성인력, 가족지원, 아동보육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	
	보건위생과	지역보건, 건강증진, 의약관리, 질병관리, 위생관리, 위생지도	
문화관광환경국	문화예술과	문화, 예술, 문화재, 문화산업	
	관광항공과	관광정책, 관광마케팅, 관광개발, 공항지원	
	체 육 과	체육, 체육시설, 체육산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환경보전, 자연환경, 대기관리, 환경지도, 자원순환	
	수질관리과	수질관리, 수계관리,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기획감사, 예산장비	
	방호구조과	방호조사, 예방홍보, 구조구급, 119긴급구조상황실, 소방항공구조대	

[별표9]

**직속기관, 사업소 두는 팀 명칭 (제5조 제5항 관련)**

부서명		명 칭	비고	
직속기관				
충북과대학대학	교 학 과	교무, 학생		
	기획협력과	기획협력		
	행정지원과	서무, 관리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	총무, 관리		
	교육운영과	교육기획, 교육운영, 교육분석, 사이버교육		
	도민연수과	교육훈련, 기술교육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총무, 경리		
	시험연구부	식량자원연구과	연구기획, 답작연구, 전작연구, 특작연구, 경영정보연구	
		원예생명연구과	원예이용연구, 과수연구, 화훼연구, 식물공학연구	
		친환경농업연구과	토양환경연구, 작물보호연구, 식품개발연구, 버섯재배연구	
	기술지원부	지원기획과	지도기획, 홍보지원, 인력개발	
		기술보급과	식량기술, 원예기술, 축산특작	
		농촌자원과	생활기술, 자원환경, 식품소득	
	시험장	포도연구소	육종재배연구, 환경이용연구	
		마늘연구소	육종재배연구, 환경이용연구	
		채소연구소	육종재배연구, 환경이용연구, 수박연구	
		감사시험장	감상, 소득개발	
	보건연구원	행정지원과	총무, 경리	
	소방서	청주동부, 서부, 충주, 제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예산장비
방호구조과			방호안전, 예방홍보, 구조구급	
현장대응단			지휘1, 지휘2, 지휘3	

부 서 명		명 칭		비고
소방서	영동·증평·진천·음성·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예산장비	
		방호구조과	방호구조구급, 예방홍보	
		현장대응단	지휘1, 지휘2, 지휘3	
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총 무 과	총무, 경리		
	도로관리과	도로관리, 도로보수, 장비		
	시 험 실	토질시험, 재료시험		
	충 주 지 소	도로보수, 안전관리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	총무, 휴양림, 박물관		
	임업시험과	시험연구, 자원보호, 수목원		
	산림관리과	산림경영, 산림조성, 산림토목		
축산위생연구소	검 사 과	총무, 검사, 분석		
	방 역 과	방역, 진단		
	종축시험장	가축개량, 시험연구, 유전공학		
	북 부 지 소	방역, 검사		
	남 부 지 소	방역검사		
	제 천 지 소	방역검사		
농산사업소	종자생산과	총무, 벼종자, 발종자		
	종자보급과	관리, 생산, 정선		
청남대리사업소	운 영 과	총무, 운영		
	시 설 과	시설관리, 조경관리		
여성발전센터		행정지원, 교육운영, 연구개발		
내수면연구소		사업, 시험, 지도		

**고 시**

충청북도고시 제2009 - 22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고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2009년 2월 6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제2009-1호	신대한격투기연맹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74-16	김희수	2009. 1.29	한국의 전통무도 격투기 연구를 통한 호신건강체조 개발보급	253-7316	체육과 신규등록

충청북도 고시 제2009 - 23호

### 산림법인 등록 고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6일

충청북도지사

- 다 음 -

등록번호	등록 년월일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산림사업 의 종류	비고
충청북도 2009-4	2009 1. 29.	(주) 대지조경	황상호	충북 흥덕구 사창동 509-4번지	도시림 등 조성	

충청북도 고시 제2009 - 24호

산림법인 등록 고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6일

충청북도지사

- 다 음 -

등록번호	등록 년월일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산림사업 의 종류	비고
충청북도 2009-5	2009 1. 29.	그린산림조경 (주)	김돌미	충북 충주시 봉방동 88-2번지	도시림 등 조성	

충청북도 고시 제2009 - 25호

### 산림법인 등록 고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6일

충청북도지사

- 다 음 -

등록번호	등록 년월일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산림사업 의 종류	비고
충청북도 2009-6	2009 2. 3.	음성조경 (주)	김인수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673번지	도시림 등 조성	

**공 고**

충청북도공고 제2009 - 61호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2009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충청북도지사

#### 1. 지정 내역

법인·단체명	소재지	법인·단체의 목적사업	지정 기간
무심갤러리 (업은숙)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3-5	• 미술작품 기획 전시 • 아트페어 참여 및 지원	2009. 2. 6 ~2011. 2. 5
자계예술촌 (박창호)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569	• 마당극, 춤, 풍물 공연 • 지역문화예술 조사·연구	"
풍물굿패 씨알누리 (라장흠)	청원군 북이면 광암리 79-4	• 풍물굿 창작, 공연, 보급 • 지역문화예술 교육	"
공연기획사 소명 (안중원)	청주시 상당구 영동 95-3	• 특색 있는 공연 기획	"
청주놀이마당 울림 (구본행)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22-15	• 전통극 창작·공연 • 전통극 연구·교육	"
청주시문화 산업진흥재단 (남상우)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201-31	• 문화사업 계획 수립·시행 • 공예전시를 통한 예술발전	"

#### 2. 지정 조건

-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 공연분야는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을, 전시분야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을 개최하여야 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충청북도 공고 제2009 - 66호

##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및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충청북도지사

1. 도로의 종류 : 국가지원지방도
2. 노 선 명 : 국지도 49호선(영암~원주)
3. 도로 사용개시 및 폐지 구간
  - 개시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충북 괴산군 청천면 운교리
  - 폐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충북 괴산군 청천면 운교리
4. 중요 경과지 : 괴산군 청천면 사기막리
5. 전 용 구 간 :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괴산군 청천면 운교리
6. 중 용 구 간 :
7. 개 시 일 시 : 2009. 02. 06. 부터
8. 비 고
  - 도면 및 위치도 열람 가능
  - 충청북도 건설방재국 도로과(전화: 043-220-4134)

첨부 : 5만분의 1 지형도

충청북도 공고 제2009 - 67호

##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및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충청북도지사

1. 도로의 종류 : 지방도
2. 노 선 명 : 지방도 509호선(회남~가덕)
3. 도로 사용개시 및 폐지 구간
  - 개시 :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 폐지 :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4. 중요 경과지 :
5. 전 용 구 간 :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6. 중 용 구 간 :
7. 개 시 일 시 : 2009. 02. 06. 부터
8. 비 고
  - 도면 및 위치도 열람 가능
  - 충청북도 건설방재국 도로과(전화: 043-220-4134)

첨부 : 5만분의 1 지형도

충청북도 공고 제2009 - 68호

## 부동산개발업등록취소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충청북도지사

업종(등록번호)	부동산개발업(충북080032)
상호(대표자)	영 화(대표 김 세 형)
등록일자	2008년 6월 19일
자 본 금	1,272,424천원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231 (사창동)
처분내용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일자	2009.2.2
처분사유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 미이수
근거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충청북도 공고 제2009 - 71호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변경 공고

관광진흥법 제51조에 의하여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충청북도지사

□ 계획의 개요

가. 적용기간 : 2007 ~ 2011 (5개년)

나. 범 위 : 26개지구 8,394,004㎡

(단위 : ㎡)

지구명		면적		증감	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6지구	26지구	8,038,978	8,394,004	증 355,026	
칠금	UN평화공원	295,000	650,026	증 355,026	
충주호체협	충주호체협	31,943	31,943	변동없음	
교리	교리	333,519	333,519	변동없음	
능강	능강	136,818	136,818	변동없음	
금월봉	금월봉	88,119	88,119	변동없음	
만남의광장	만남의광장	147,440	147,440	변동없음	
제천온천	제천온천	296,700	296,700	변동없음	
계산	계산	135,806	135,806	변동없음	
속리산레저	속리산레저	130,191	130,191	변동없음	
장계	장계	198,705	198,705	변동없음	
송호	송호	292,231	292,231	변동없음	
수옥정	수옥정	229,469	229,469	변동없음	
괴강	괴강	238,132	238,132	변동없음	
무극전적지	무극전적지	18,481	18,481	변동없음	
천동	천동	120,982	120,982	변동없음	
다리안	다리안	153,835	153,835	변동없음	
온달	온달	152,050	152,050	변동없음	
충은온천	충은온천	224,825	224,825	변동없음	
능암온천	능암온천	199,210	199,210	변동없음	
돈산온천	돈산온천	876,556	876,556	변동없음	
KBS제천촬영장	KBS제천촬영장	110,060	110,060	변동없음	
사인암	사인암	99,441	99,441	변동없음	
밀레니엄타운	밀레니엄타운	577,673	577,673	변동없음	
구병산	구병산	149,256	149,256	변동없음	
늘머니	늘머니	1,807,989	1,807,989	변동없음	
에코세라피	에코세라피	994,547	994,547	변동없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청(관광진흥과 043-220-4682) 및 시·군(문화관광과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 공고 제2009-72호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충청북도지사

구분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비고
양도인 (법인)	정보통신공사업 (제430013호)	(주)브이넷 대표:조선희	충주시 교현1동 241-3	
양수인 (법인)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주)원성 대표이사 : 조민용 (151111-*****)	충주시 봉방동 404-6	

※ 양도신고 수리일 : 2009. 2.

**시군행정**

청주시 고시 제2009-13호

**청주 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고시 제2006-163호(2006. 11. 10.), 청주시고시 제2007-76호(2007. 7. 27.) 및 청주시고시 제2008-78호(2008. 8. 8.)로 변경고시된 용정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6일

청 주 시 장

청주 도시관리계획결정(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불 임

청주 도시관리계획결정(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형도면고시 도면 : 생 략

###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신설	청주 용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392-6번지 일원	-	증) 210,850	210,850	

• 도시개발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결정사유	비 고
신설	청주 용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392-6번지 일원	○사업대상지는 청주도시기본계획상 1단 계 주거지역(2002~2006)으로, 용암2택 지개발지구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도시 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청주 시의 주택보급율을 제고하기 위함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면적 (㎡)	비 고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계	210,850.0	100.0	210,850.0	100.0	5,120.0	
주 거 용 지	135,038.0	64.0	132,478.0	62.8	△2,560.0	
공 동 주 택	74,300.0	35.2	75,015.0	35.5	715.0	
단 독 주 택	54,363.0	25.8	50,959.0	24.2	△3,404.0	
준 주 거	6,375.0	3.0	6,504.0	3.1	129.0	
도시기반시설용지	75,812.0	36.0	78,372.0	37.2	2,560.0	
도 로	48,627.4	23.1	50,123.0	23.8	1,495.6	보행자도로 포함
주 차 장	1,285.0	0.6	2,139.0	1.0	854.0	1개소 → 3개소
공 원	9,613.6	4.6	9,616.0	4.6	2.4	어린이공원 2개소
녹 지	12,086.0	5.7	12,294.0	5.8	208.0	경관 및 완충녹지
하 천	4,200.0	2.0	4,200.0	2.0	0.0	수변공원으로 조성

청주 도시관리계획결정(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조서

1-1. 용도지역 (도시개발구역 내)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210,850	0	210,850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5,630	197,894	203,524	96.5	
	제1종전용	764	-	764	0.4	
	제1종일반	4,866	102,478	107,344	50.9	
	제2종일반	-	85,275	85,275	40.4	
	준주거	-	10,141	10,141	4.8	
녹 지 지 역	소 계	205,220	-197,894	7,326	3.5	
	생산녹지	58,102	-58,102	-		
	자연녹지	147,118	-143,992	3,126	1.5	체육공원
	보전녹지	-	4,200	4,200	2.0	영운천

1-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6	용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당구 용정동 392-6일원	210,850	-	210,850	
변경	7	용암(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청주시 상당구 용암, 용정, 금천, 용담동 일원	1,632,505.2	감 7,095	1,625,410.2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조서

### 2-1. 교통시설

#### 2-1-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사업구역내)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29	3,757	50,194	7	1,357	24,199	10	1,386	15,437	12	1,011	10,558
대로	2	62	2,487	1		675				1	62	1,812
중로	6	1,701	28,698	2	817	17,512	1	213	3,195	4	668	7,991
소로	21	1,994	19,009	4	540	6,012	9	1,173	12,242	7	281	755

주) 대1-6, 대3-12호선은 구역내 일부 포함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종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6	30-38	주 간선도로	29,016	3호광장 (대1-15)	3호광장 (대1-15)	일반도로	2차 우회도로	건고7 (67.01.16)	
변경	대로	1	6	30-38	주 간선도로	29,016	3호광장 (대1-15)	3호광장 (대1-15)	일반도로	2차 우회도로		완화차로설치
기정	대로	3	12	25	주 간선도로	482	중1-59	중1-3	일반도로		건고7 (00.06.30)	
변경	대로	3	12	25	주 간선도로	482 (62)	중1-59	중1-3	일반도로			일부구간편입
신설	중로	1	106	20-22	보조 간선도로	358	중1-59	중2-136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106	20-22	보조 간선도로	358	중1-59	중2-136	일반도로			일부폭원변경
신설	중로	1	107	20-22	보조 간선도로	459	대1-6	중1-106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36	18	집산도로	213	중1-107	중3-10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79	12	집산도로	47	소2-774	용성중입구	일반도로		청주2005-62호 (2005.7.8)	
변경	중로	3	79	14.5	집산도로	131	중3-301	중2-201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02	12	집산도로	273	중1-106	소1-216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03	13	국지도로	103	중1-106	완충녹지 7-7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04	12	국지도로	164	중1-106	호미골공원 ㉞	보행자도로			
변경	중로	3	104	12	국지도로	161	중1-106	호미골공원 ㉞	보행자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종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323	10	국지도로	188	중3-102	소2-973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324	10	국지도로	133	중1-106	소1-325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325	10	국지도로	181	중1-107	중1-106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326	10	국지도로	38	중2-136	소1-325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774	8	국지도로	547	중1-59	소1-216	일반도로	용암2백 지개발사 업	충고01-48 (01.4.21)	
신설	소로	2	972	8	국지도로	109	대3-12	영 운 천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973	8	국지도로	172	중3-102	소1-32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974	8	국지도로	30	소1-323	소2-97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975	8	국지도로	139	중1-106	소1-32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976	8	국지도로	75	소1-324	소2-975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977	8	국지도로	134	중2-136	소2-980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978	8	국지도로	134	중2-136	소2-980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979	8	국지도로	270	중2-136	중3-10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980	8	국지도로	110	소2-980	대1-6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940	4	국지도로	88	중1-107	소2-973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3	941	4	국지도로	53	중1-107	소2-981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3	942	4	국지도로	38	소2-979	소2-980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3	943	4	국지도로	38	소2-978	소2-979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3	944	4	국지도로	38	중2-136	소2-978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3	945	4	국지도로	16	중1-107	소2-975	보행자도로			

2-1-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60	노외주차장	용정지구 도시개발구역내	-	1,229	1,229		
신설	61	노외주차장	용정지구 도시개발구역내	-	457	457		
신설	62	노외주차장	용정지구 도시개발구역내	-	453	453		

2-2. 공간시설

2-2-1.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6	호미골 공원	체육공원	용담동쓰레기 매립장	173,883.7	증20.4	173,904.1 (1,485)	충북교77 (00.06.30)	(지구내)
신설	137	용정1 공원	어린이 공원	용정지구 도시개발구역내	-	5,334	5,334		
신설	138	용정2 공원	어린이 공원	용정지구 도시개발구역내	-	2,797	2,797		

① 어린이공원 137호 조성계획 결정조서

- 총괄조서

시설구분	세부시설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규모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5,334.0	2,587.0	22기			시설율 (48.5%)
도로/광장	도로 및 광장	1,442.0	1,442.0				
조경시설	(과고라)	-	-	2기			
휴양시설	휴게소(평벤치)	126.5	126.5	14기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조합놀이대, 유아용 조합놀이대)	908.0	908.0	2기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시설)	110.5	110.5	4기			
기타	녹지	2,747.0					

※ 공작물은 ( )에 표시

- 세부시설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m <sup>2</sup> )	시설면적 (m <sup>2</sup> )	규모	건축면적(m <sup>2</sup> )		구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계				5,334.0	2,587.0	22기				
도로 및 광장	소 계			1,442.0	1,442.0					
	- 1	도로 광장	390-7과,10과, 15과,17과 392-6과,14과,17과	568.5 873.5	568.5 873.5					
조경 시설	소 계					2기				
	-	파고라	2휴게소			2기				
휴양 시설	소 계			126.5	126.5	14기				
	2 -	휴게소 평벤치	390-10과	126.5	126.5	14기				
유희 시설	소 계			908.0	908.0	2기				
	3 - -	어린이놀이터 조합놀이대 유아용 조합놀이대	390-7과,10과,17과 3어린이놀이터 3어린이놀이터	908.0	908.0	1기 1기				
	소 계			110.5	110.5	4기				
운동 시설	4 -		390-10과,15과 392-14과,16과,17 과	110.5	110.5					
		체력단련시설	4체력단련장			4기				
녹지 및 기타 시설	소 계			2,747.0						
	-	녹지		2,747.0						

※ 시설물의 면적이 중복된 것은 "( )"로 표기하고 시설면적에 미계상, 수량은 "기"수로 통일

- 도로시설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도면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sup>2</sup>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계						538.8				
신설	소로	3	1	6.0	6.1	36.6	진입로	남서측진입로	3어린이놀이터	
신설	소로	3	2	5.0	71.6	358.0	연결로	소3-1	1광장	
신설	소로	3	3	5.0	15.4	77.0	진입로	북측진입로	소3-2	
신설	소로	3	4	6.0	11.2	67.2	진입로	남측진입로	1광장	

② 어린이공원 138호 조성계획 결정조서

- 총괄조서

시설구분	세부시설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규모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797.0	1,388.8	17기			시설율 (49.6%)
도로/광장	도로 및 광장	659.2	659.2				
조경시설	(파고라)	-	-	3기			
휴양시설	휴게소(평벤치)	496.8	496.8	12기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조합놀이대, 유아용 조합놀이대)	232.8	232.8	2기			
기타	녹지	1,408.2					-

※ 공작물은 ( )에 표시

- 세부시설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규모	건축면적(㎡)		구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2,792.0	1,388.8	17기				
도로 및 광장	소 계			659.2	659.2					
	- 1	도로 광장	401대, 401-5답, 402-7답,4답	289.7 369.5	289.7 369.5					
조경 시설	소 계					3기				
	-	파고라	2휴게소			3기				
휴양 시설	소 계			81.0	81.0	12기				
	2 -	휴게소 평벤치	401대, 402-4답,7답	81.0	81.0	12기				
유희 시설	소 계			232.8	232.8	2기				
	3	어린이놀이터	401-5답, 402-7답,4답	232.8	232.8					
	-	조합놀이대 유아용조합놀이대	3어린이놀이터 3어린이놀이터			1기 1기				
녹지 및 기타 시설	소 계			1,408.2						
	-	녹지		1,408.2						

※ 시설물의 면적이 중복된 것은 "( )"로 표기하고 시설면적에 미계상, 수량은 "기"수로 통일

- 도로시설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도면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sup>2</sup>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계						289.7				
신설	소로	3	1	6.0	3.8	22.7	진입로	서측진입로	3어린이놀이터	
신설	소로	3	2	5.0	51.5	267.0	진입로	북측진입로	3어린이놀이터	

2-2-2.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7-7	녹 지	완충녹지	-	31,656	증5,239	36,895 (10,047)	건설부442 (85.10.11)	(지구내)
신설	399	녹 지	완충녹지	용정지구 도시개발구역내	-	1,655	1,655		
신설	400	녹 지	경관녹지	용정지구 도시개발구역내	-	245	245		
신설	401	녹 지	경관녹지	용정지구 도시개발구역내	-	347	347		

2-3. 공공문화체육시설

2-3-1.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7	학교	중학교	상당구 용정동 388-1일원	15,741	감 175	15,566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조서

3-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구번호	용도	가구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1 BL	주거용지, 공원	34,855.0	1-1	-	33,323.0	공동주택
			1-2	-	1,485.0	체육공원
2 BL	주거용지, 녹지	46,195.0	2-1	-	41,621.0	공동주택
			2-2	-	4,550.0	완충녹지
3 BL	주거용지	1,773.0	-	-	1,773.0	단독주택
4 BL	주거용지	3,063.0	-	-	3,063.0	단독주택
5 BL	주거용지	2,151.0	-	-	2,151.0	단독주택
6 BL	주거용지	3,398.0	-	-	3,398.0	준주거
7 BL	공원, 주차장	6,563.0	7-1	-	5,334.0	어린이공원
			7-2	-	1,229.0	주차장
8 BL	주거용지	3,106.0	-	-	3,106.0	준주거
9 BL	주거용지	3,197.0	-	-	3,197.0	단독주택
10 BL	주거용지	1,927.0	-	-	1,927.0	단독주택
11 BL	주거용지	3,063.0	-	-	3,063.0	단독주택
12 BL	주거용지	1,822.0	-	-	1,822.0	단독주택
13 BL	주거용지	3,075.0	-	-	3,075.0	단독주택
14 BL	주거용지	1,935.0	-	-	1,935.0	단독주택
15 BL	주거용지	2,995.0	-	-	2,995.0	단독주택
16 BL	주거용지	8,217.0	-	-	8,217.0	단독주택
17 BL	공원 녹지, 주차장	5,432.0	17-1	-	2,797.0	어린이공원
			17-2	-	2,180.0	완충녹지
			17-3	-	457.0	주차장
18 BL	녹지	477.0	-	-	477.0	완충녹지
19 BL	녹지	347.0	-	-	347.0	경관녹지
20 BL	주거용지	5,333.0	-	-	5,333.0	단독주택
21 BL	주거용지, 녹지	2,133.0	21-1	-	1,887.0	단독주택
			21-2	-	246.0	경관녹지
22 BL	주거용지, 녹지, 주차장	3,433.0	22-1	-	1,655.0	완충녹지
			22-2	-	1,323.0	단독주택
			22-3	-	453.0	주차장
23 BL	주거용지	2,012.0	-	-	2,012.0	단독주택
24 BL	주거용지	1,960.0	-	-	1,960.0	단독주택
25 BL	주거용지	1,512.0	-	-	1,512.0	단독주택
26 BL	주거용지, 녹지	3,314.0	26-1	-	2,284.0	단독주택
			26-2	-	1,030.0	완충녹지
27 BL	주거용지, 녹지	2,119.0	27-1	-	1,430.0	단독주택
			27-2	-	689.0	완충녹지
28 BL	녹지	1,120.0	-	-	1,120.0	완충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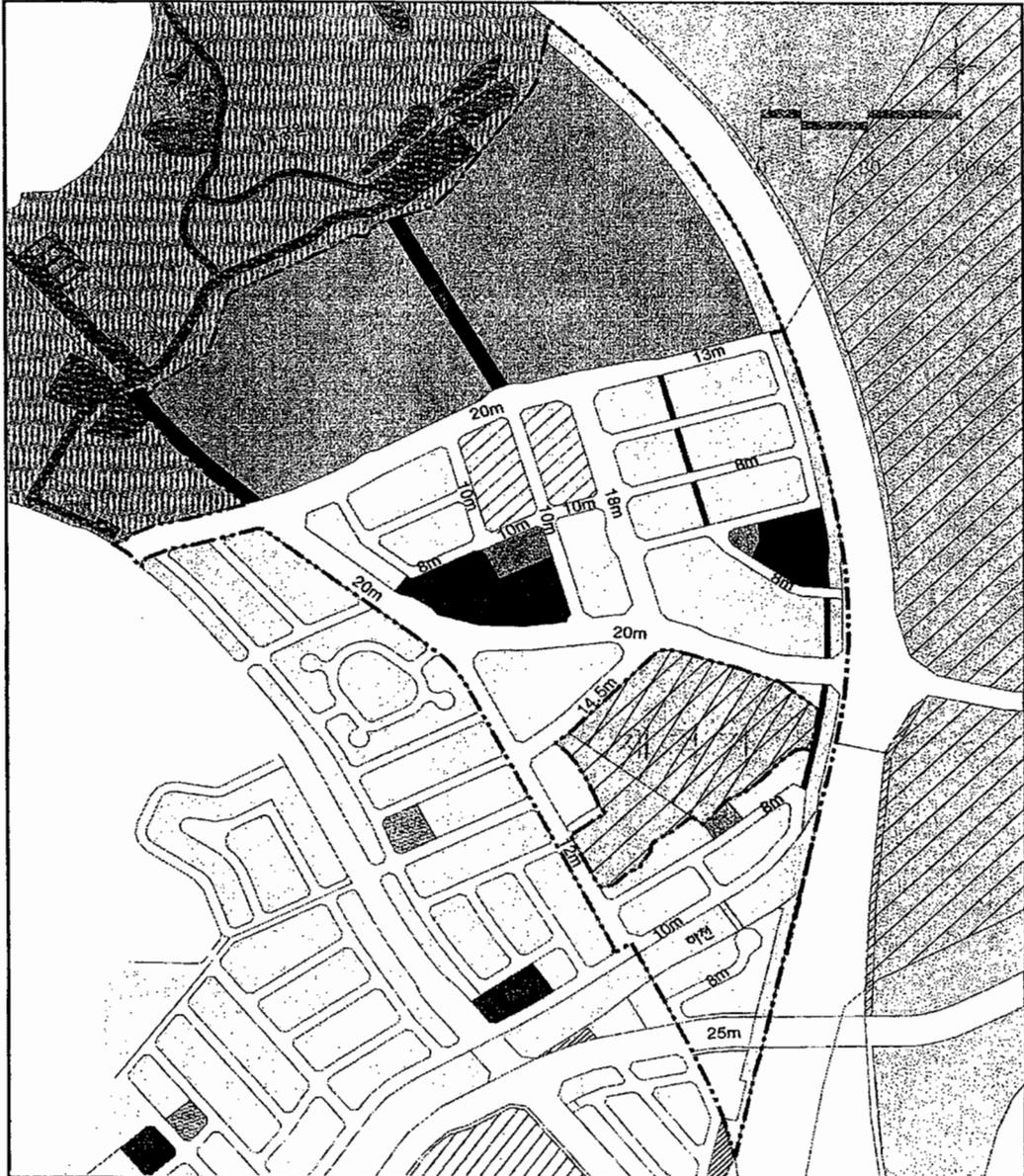
3-2.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1 BL	1-1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공동주택
		건폐율	25%이하	
		용적율	230%이하	
		높이	최고높이 : 25층이하	
		배치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아파트를 판상 형태로서 획일적이며 평행으로 배치하는 것은 지양</li> <li>○ 조망권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전체동수의 30%이상은 탑상형으로 배치</li> </ul>	
		색채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6~10m의 건축한계선 지정(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1-2	용도	지정용도 : 공원시설(체육공원)	체육공원
2 BL	2-1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공동주택
		건폐율	25%이하	
		용적율	230%이하	
		높이	최고높이 : 25층이하	
	배치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의 소음등에 대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로1-6호선(동부우회도로)에 접하는 공동주택의 배치는 소음 등의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는 형태 및 배치를 권장</li> <li>○ 모든 아파트를 판상 형태로서 획일적이며 평행으로 배치하는 것은 지양</li> <li>○ 조망권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전체동수의 30%이상은 탑상형으로 배치</li> </ul>		
	색채	색채계획 참조		
	2-2	용도	지정용도 : 녹지시설(완충녹지)	완충녹지
3 BL 4 BL 5 BL	-	용도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허용하는 용도	단독주택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00%이하			
높이	최고높이 : 4층이하			
		건축선	1m의 건축한계선 지정(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대 용	비 고
6 BL 8 BL	-	용 도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허용하는 용도	준주거
		건폐율	70%이하	
		용적율	400%이하	
		높 이	최저높이 : 3층이상, 최고높이 : 7층이하	
		건축선	1m의 건축한계선 지정(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7 BL	7-1	용 도	지정용도 : 공원시설(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7-2	용 도	지정용도 : 주차장시설(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 차 장
		건폐율	80%이하	
		용적율	560%이하	
		높 이	최고높이 : 7층이하	
건축선	가로변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9 BL ~ 16 BL	-	용 도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허용하는 용도	단독주택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00%이하	
		높 이	최고높이 : 4층이하	
		건축선	1m의 건축한계선 지정(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17 BL	17-1	용 도	지정용도 : 공원시설(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17-2	용 도	지정용도 : 녹지시설(완충녹지)	완충녹지
	17-3	용 도	지정용도 : 주차장시설(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 차 장
		건폐율	80%이하	
		용적율	320%이하	
		높 이	최고높이 : 4층이하	
건축선	가로변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18 BL	-	용 도	지정용도 : 녹지시설(완충녹지)	완충녹지
19 BL	-	용 도	지정용도 : 녹지시설(경관녹지)	경관녹지
20 BL	-	용 도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허용하는 용도	단독주택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00%이하	
		높 이	최고높이 : 4층이하	
		건축선	1m의 건축한계선 지정(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21 BL	21-1	용 도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허용하는 용도	단독주택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00%이하	
		높 이	최고높이 : 4층이하	
		건축선	1m의 건축한계선 지정(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21-2	용 도	지정용도 : 녹지시설(경관녹지)	경관녹지
22 BL	22-2	용 도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허용하는 용도	단독주택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00%이하	
		높 이	최고높이 : 4층이하	
		건축선	1m의 건축한계선 지정(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22 BL	22-3	용 도	지정용도 : 주차장시설(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 차 장
		건폐율	80%이하	
		용적율	320%이하	
		높 이	최고높이 : 4층이하	
		건축선	가로변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23 BL ~ 25 BL	-	용 도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허용하는 용도	단독주택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00%이하			
높 이	최고높이 : 4층이하			
건축선	1m의 건축한계선 지정(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26 BL	26-1	용 도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허용하는 용도	단독주택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00%이하	
		높 이	최고높이 : 4층이하	
		건축선	1m의 건축한계선 지정(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26-2	용 도	지정용도 : 녹지시설(완충녹지)	완충녹지
27 BL	27-1	용 도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허용하는 용도	단독주택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00%이하	
		높 이	최고높이 : 4층이하	
		건축선	1m의 건축한계선 지정(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27-2	용 도	지정용도 : 녹지시설(완충녹지)	완충녹지
28 BL	-	용 도	지정용도 : 녹지시설(완충녹지)	완충녹지

# 용정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범 례		도시개발구역		준주거용지		도 로
			단독주택용지		공 원		주 차 장
			공동주택용지		녹 지		하 천

충주시 고시 제2009-10호

충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승인 고시(K-M그린CC)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 산7번지일원에 골프장조성에 따른 충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골프장)이 충청북도 고시 제2009-8호(2009.1.16)로 결정고시 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충청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6일  
충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조서

○ 용도지역(변경) 지형도면승인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24,048	-	924,048	100.0	-
관 리 지 역	소 계	542,624	381,424	924,048	100.0	-
	계획관리지역	-	924,048	924,048	100.0	-
	생산관리지역	-	-	-	-	-
	보전관리지역	-	-	-	-	-
	관리지역(미세분)	542,624	△ 542,624	-	-	-
농 립 지 역		381,424	△ 381,424	-	-	-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⑦	체육 시설	골프장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 산7번지 일원	-	924,048	924,048	-	-

2.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승인도 : 충주시청(지역개발과)에 비치

3. 관계도서를 충주시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청원군 고시 제2009 - 7호

## 장남도로(군도23호) 선형개량공사 편입토지 세목고시

청원군고시 제2008-199(2008.11.05)호, 충청북도보 제2536호(2008.11.14)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공고된 장남도로(군도23호)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세목을 도로법 제48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6일

청 원 군 수

1. 사업명 : 장남도로(군도23호) 선형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청원군수
3. 사업구간
  - 시점 :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99
  - 종점 :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139-12
4. 사업시행기간 : 2009. 1. - 2009. 12.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장남도로(군도23호) 선형개량공사」  
편입토지 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	리동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옥산	장남	20	답	5,784	1,904	박재찬	청주시 개신동 10 삼익 (아)103-405				
2	옥산	장남	21	답	1,572	230	박재찬	청주시 개신동 10 삼익 (아)103-405				
3	옥산	장남	21-1	답	2,118	237	이상현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6	오창단위농업 협동조합	청원군 오창면 청리 2-1	근저당 권자	
4	옥산	장남	21-2	답	1,583	173	김광복	청원군 오창면 백현리 139-5	오창단위농업 협동조합			
5	옥산	장남	23	답	4,580	545	신수일	청원군 오창면 백현리 139-5	오창단위농업 협동조합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279-1	근저당 권자	
6	옥산	장남	24	답	1,900	257	신용관	청원군 오창면 성재리 455				
7	옥산	장남	24-1	답	1,757	303	신용관	청원군 오창면 성재리 455	신흥군	청원군 오창면 성재리 295	합유자	
								신인중	청원군 오창면 성재리 337	합유자		
								신인국	청원군 오창면 성재리 457	합유자		
								신복군	청원군 오창면 성재리 317-1	합유자		
8	옥산	장남	57	답	2,843	1,160	신두균	진해시 대평동 2-203				
9	옥산	장남	60	답	3,101	322	문화류씨동지 공파문중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6				
10	옥산	장남	61	답	2,477	206	경주최씨화숙 공파	청원군 옥산면 호족리 349				
11	옥산	장남	61-1	답	994	67	최승덕	청주시 상당구 읍장동 747 두진(아)101-205				
12	옥산	장남	62	답	3,598	127	최승덕	청주시 우암동 351-11				
13	오창	백현	188	답	4,897	1,731	박재규	청원군 오창면 백현리 133				
14	오창	백현	139-6	대	536	8	김정연	청원군 오창면 백현리 139-6	김춘식	청주시 남문로1가 173	근저당 권자	
15	오창	백현	139-7	대	35	35	유재준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5				
16	오창	백현	139-8	대	311	52	유재준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5				
17	오창	백현	139-9	대	360	11	김현태	청주시 대성동 69-3				
18	오창	백현	139-14	대	45	9	유재준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5				

청원군고시 제 2009 - 8호

**청원 내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산28-7번지 일원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풍정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2. 동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43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2월 6일  
청 원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풍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산28-7번지 일원	67,993	-	67,993	구역계 변경

○ 결정사유서

도면 번호	구역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풍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67,993m <sup>2</sup> ○구역경계 조정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총면적 변경없이 구역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7,993	67,993	100	100	
공 업 용 지	40,483	40,483	59.54	59.54	
녹 지 용 지	17,277	17,433	25.41	25.64	증 156m <sup>2</sup>
공공시설용지	10,233	10,077	15.05	14.82	감 156m <sup>2</sup>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비도시계획시설)

가) 도로

구분	도로명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200	풍정리 산28-7	풍정리 산28-7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1,170	풍정리 산28-7	풍정리 산28-7	일반 도로	-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위치	획지계획				비고
		기정	변경		면적		획지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1BL	19,336	20,240	내수읍 풍정리 산28-7번지 일원	1,208	1,208	1-1	1-1	공 업 지
					2,574	2,574	1-2	1-2	
					1,460	1,460	1-3	1-3	
					2,400	2,400	1-4	1-4	
					1,882	1,882	1-5	1-5	
					1,826	1,826	1-6	1-6	
					1,681	1,681	1-7	1-7	
					1,804	1,804	1-8	1-8	
					2,089	2,089	1-9	1-9	
					2,412	3,316	1-10	1-10	
	소 계	19,336	20,240		19,336	20,240			
	2BL	19,278	18,485	내수읍 풍정리 산28-7번지 일원	1,453	1,453	2-1	2-1	
					1,914	1,914	2-2	2-2	
					1,500	1,500	2-3	2-3	
					3,248	3,162	2-4	2-4	
					2,430	4,314	2-5	2-5	
					2,591	1,821	2-6	2-6	
					1,821	1,614	2-7	2-7	
					1,614	1,322	2-8	2-8	
					1,322	1,385	2-9	2-9	
1,385					-	2-10	-		
소 계	19,278	18,485		19,278	18,485				
3BL	1,869	1,758	내수읍 풍정리 산28-7번지 일원	1,869	1,758	3-1	3-1		
소 계	1,869	1,758		1,869	1,758				
4BL	10,233	10,077	내수읍 풍정리 산28-7번지 일원	408	512	관리사무소, 식당	오수 처리장	공 공 시 설 지 용 지	
				211					
				9,614	9,565	도로	도로		
소 계	10,233	10,077		10,233	10,077				

5BL	17,277	17,433	내수읍 풍정리 신28-7번지 일원	15,059	15,263	조성녹지	조성녹지	녹지 용지
				2,218	2,170	구거녹지	구거녹지	
소 계	17,277	17,433		17,277	17,433			
합 계	67,993	67,993		67,993	67,993			

④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공업용지] (기정) 1BL 1-1~1-10 2BL 2-1~2-10 3BL 3-1	용 도	지정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1호에 의한 공장 (단,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9 제2호 자목(1)내지(4)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불허 용도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50%이하	
	(변경) 1BL 1-1~1-10 2BL 2-1~2-9 3BL 3-1	높 이	4층이하, 15m이하	
		색 채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권장)	
	[공공시설용지] 4BL	용 도	지정용도 : (기정) 도로, 관리사무소, 식당, 오수처리장 등 공공용시설 (변경) 도로, 오수처리장 등 공공용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륜	100%이하	
		높 이	3층이하, 12m이하	
[녹지용지] 5BL	용 도	지정용도 : 녹지(법면, 조경시설 등)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색 채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권장)	

⑤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항 목	지점	개 선 방 안
진 출 입 동 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 진출입부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li> <li>•사업지 진출입구 회전반경확보(R=15m)</li> </ul>
주 차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정주차 36대      •주차수요(2013년) 80대</li> <li>•계획주차 153대</li> <li>공장용지는 획지당 최소 7대 확보</li> <li>공공시설용지는 최소 6대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대비 497.2%</li> <li>- 수요 대비 223.8%</li> <li>- 장애인 전용주차 : 10대</li> <li>●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li> </ul>
교통안전 및 기타	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 주변도로 노면표시설치</li> <li>●교통안전표지판설치</li> <li>●보행자도로 단절지점 횡단보도설치(6개소)</li> <li>●도로 주요지점 과속방지턱 설치(3개소)</li> <li>●시거불량지점 반사경 설치 (6개소)</li> <li>●지하도 대형차량 운행제한 (차중량 5.5t, 차높이 3.5m이상에 한함.)</li> <li>●지하도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운행방안 제시(성수화학앞 교차로, 세교사거리)</li> </ul>

2.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 상기 결정조서와 같음.

3. 군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도보게재 생략

보은군 고시 제2009 - 12호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산30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 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6일

보 은 군 수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09,588	-	809,588	100.0	-
관 리 지 역	소 계	298,974	510,614	809,588	100.0	-
	계획관리지역	250,487	559,101	809,588	100.0	-
	생산관리지역	-	-	-	-	-
	보전관리지역	48,487	△ 48,487			
농 립 지 역		510,614	△ 510,614	-	-	-

■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 정	변 경			
1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산30번지 일원	보 전 관리지역	계 획 관리지역	48,487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활용과 급증하는 국민 골프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체육시설(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
		농림지역	계 획 관리지역	510,614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경 과 지	최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 (m)								
신설	소로	1	3	10	국지 도로	427	탄부면 상장리 146-2번지	탄부면 상장리 16번지	일반 도로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 1-3	○ 신설 ○ 폭원 : 12~24m ○ 연장 : 427m	체육시설(골프장) 진입로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신설 결정하고자 함.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체육시설	골프장	탄부면 상장리 산30번지일원	-	(증)809,588	809,588	-	계획관리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서
2	체육시설	●골프장(신설) : 809,588㎡	급증하는 국민골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체육시설(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하고자 함.

다. 보건위생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동묘지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산42번지 일원	232,361㎡	감 232,361㎡	-	1999.8.17	계획관리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공동묘지	○ 공동묘지 폐지 - 면적 : 232,361㎡	○ 공설(공원)묘지조성 사업 시행 지난 ○ 행정재산(묘지)용도폐지 (잡종재산) 기 결정

3. 관계도서를 보은군청 지역개발과(☎540-34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지형도면 고시도 (1/2,000~1/5,000) : 보은군청(지역개발과)에 비치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보은군 고시 제2009 - 13호

**보은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고시**

보은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6일  
보 은 군 수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 (m)								
신설	소로	1	3	10	국지 도로	427	탄부면 상장리 146-2번지	탄부면 상장리 16번지	일반 도로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 로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li> <li>○ 폭원 : 12~24m</li> <li>○ 연장 : 427m</li> </ul>	체육시설(골프장) 진입로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신설 결정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1/5,000) : 보은군청(지역개발과)에 비치**

**3. 관계도서를 보은군청(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진천군고시 제2009 - 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고시

광혜원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6일

진 천 군 수

1. 사업시행지 :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일원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 【중로2-3호선】
  - 명 칭 : 도시계획사업(실원교차로-검문소간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읍 면 별	로 선 명	총연장 (m)	금 회 시 공			기 점	종 점
			연장(m)	폭(m)	면적(m <sup>2</sup> )		
광혜원면	중로 2-3	484	437	15	7,778	실원리 38-1	실원리 364-38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63번지
  - 성명 : 진 천 군 수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시행인가일 ~ 2011. 12. 31.
6. 사용,수용할토지 및 지장물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사업명 : 실원교차로-검문소간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임의 면적	성도명	성도명	주소	주소	성도명		주소
1	광혜원면 실원리	364-27	도	21	21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63번지					
2	광혜원면 실원리	364-51	도	202	139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63번지					
3	광혜원면 실원리	364-28	도	36	36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63번지					
4	광혜원면 실원리	364	전	1,270	388	박 등 인	충주시 상당구 우양동 156-19번지	광혜원신용 협동조합	광혜원면 광혜원리 343번지	근저당권		
5	광혜원면 실원리	639	도	2,136	875	국 (건설부)						
6	광혜원면 실원리	363-7	도	50	50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63번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사업명 : 실원교차로-경문소간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	입적 면	성도명	주소	성도명	주소	주 소	
7	광혜원면 실원리	363-3	도	99	99	김성보	광혜원면 광혜원리 431번지				
8	광혜원면 실원리	363-8	전	89	89	김복기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 동 312-17번지 우성아 파트 101-607				
9	광혜원면 실원리	363-2	전	1,425	399	변진환외3인	경기도 안성시 양성동 삼암리 204번지				
10	광혜원면 실원리	363-6	도	93	68	진천군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63번지	광혜원신용 협동조합	광혜원면 광혜원리 343번지	근저당권	
11	광혜원면 실원리	363	전	783	216	유종열	광혜원면 광혜원리 47 번지				
12	광혜원면 실원리	363-9	도	188	111	유세영	광혜원면 광혜원리 44 번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사업명 : 실원교차로-검문소간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임작 면적	성도명	주소	성도명	주소	관계인 주 소		관계인 주 소
13	광혜원면 실원리	361-2	도	149	74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63번지					
14	광혜원면 실원리	362-1	묘	588	496	한성철	광혜원면 광혜원리 350번지					
15	광혜원면 실원리	37	전	1,518	222	이건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01-1 우성아파트 8-1006					
16	광혜원면 실원리	645	구	14,111	470	국 (농림수산부)						
17	광혜원면 실원리	31-1	담	2,088	1,038	최재연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 원리 179-3번지	광혜원농업 협동조합	광혜원면 광혜원리 442-4번지	근저당권		
18	광혜원면 실원리	647	도	1,072	78	국 (농림수산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사업명 : 실원교차로-경문소간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면	임의적면	성도명	성도명	주소	주소	권리의 종류	
19	광혜원면 실원리	38-1	답	2,748	1,416	박노일	광혜원면 광혜원리 322				
20	광혜원면 실원리	38	답	2,766	50	김해진	광혜원면 실원리 58				
21	광혜원면 실원리	29-9	도	4,144	964	국 (건설부)					
22	광혜원면 실원리	66-1	도	11	11	국 (건설부)					
23	광혜원면 실원리	364-6	전	2,741	4	진천군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63번지				
24	광혜원면 실원리	364-3	전	215	139	한광희	서울시 도봉구 월계13아파트 19동 1106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사업명 : 실원교차로-검문소간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임의적 면적	성도명 및 주소	주소	성도명 및 주소	주소	
25	광혜원면 실원리	산23-60	임	38,867	71	유형록외3인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00-39	(주)신한 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20번지	근저당
26	광혜원면 실원리	303-11	구	401	12	진천농지 개발조합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271-1번지			
27	광혜원면 실원리	36-1	전	1,587	1	한상철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 원리 350번지			
28	광혜원면 실원리	38-2	답	2,682	167	서종석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 원리 467번지			
29	광혜원면 실원리	38-3	답	1,716	38	서종석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 원리 467번지			
30	광혜원면 실원리	38-4	답	1,016	19	전윤우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 리 62번지			



청주시 공고 제2009 - 168호

## 등록공인공고

청주시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청주시 공인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청 주 시 장

1. 사용일자 : 2009. 2. 6
2. 등록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명칭변경
3. 공인명 및 인영내역

등록공인명	인 영	등록공인명	인 영
청주시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운용관인 (농업기술센터)		청주시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출납원인 (농업기술센터)	

청주시공고 제2009 - 19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청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6일  
청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407-27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내덕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 대지면적 : 2,223㎡
- 건축면적 : 863.63㎡(연면적 1,286.42㎡)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81(북문로3가)
- 성 명 : 청주시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 간 : 인가일로부터 ~ 2009년 12월 31일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9. 02. 07. ~ 2009. 02. 27(20일이상)
- 장 소 : 청주시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8. 기타 관련서류는 청주시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200-2743) 및 재정경제국 회계과(☎200-2422)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청주시공고 제2009 - 19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청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6일  
청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3-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성안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 대지면적 : 2,500.30㎡
- 건축면적 : 99㎡(연면적 99㎡)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81(북문로3가)
- 성 명 : 청주시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 간 : 인가일로부터 ~ 2009년 12월 31일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9. 02. 07. ~ 2009. 02. 27(20일이상)
- 장 소 : 청주시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8. 기타 관련서류는 청주시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200-2743) 및 재정경제국 회계과(☎200-2422)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2)

공사명: (가칭)성안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 적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동	지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면적(㎡) 공부상 실제	주소	성명		
5	서운	3-13	대	413.2		서울 강남구 반포4동 44-1 상호가든맨션1-1105	신춘자		근린생활시설 (도당콜센터용)	목조기와(1층) [[{(19.7X12.6)}-(호프5 .4X5.3+1.2X2.4)-(말길 리7.9X3.8)-(마당7.0X8. 2)-(주택③(3.2X2.9)]]	85.95	119.84	서울 강남 반포 상호맨션 1-1105	신춘자	
									근린생활시설 (황금호프)	목조기와(1층) (5.4X5.3+1.2X2.4)	35.73	31.5			
									근린생활시설 (양말리아문수기)	시멘트벽돌 스테트(1층) (7.9X3.8)	26.1	30.02			
									주택①	시멘트벽돌 스테트(1층) (9.2X3.9)	27.9	35.88			
									주택②	시멘트벽돌 스테트(1층) (5.9X4.4)	17.04	25.96			
									주택③	목조기와(1층) (3.2X2.9)	3.94	9.28			
									대문	목조기와(5.2X2.4)		12.48			
									마당	자갈(7.0X8.2)		57.4			
									보도블럭	0.3X0.3/개		18개			
									가추	1.0X25.0		25			
									토방(다임)	0.3X25.0		7.5			
									식물류	소나무(5년생),매화1, 해당화,라일락1,기종나무2					
									담장	시멘블럭 담장		23m			
									담장	시멘블럭 담장		19m			



청주시공고 제2009 - 19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청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변경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6일  
청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사천동 및 흥덕구 신봉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2호선)사업
  - 명 칭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청주의곽순환도간) 개설공사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 변경전 : 도로개설 L=1,053m B=35m(A=58,179㎡)
  - 변경후 : 도로개설 L=1,220m B=35m(A=64,337㎡)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복문로3가 89번지
  - 성 명 : 청주시장(도로과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04. 08. 27 ~ 2010. 12. 31.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9. 2. 07 ~ 2009. 2. 27(20일간)
  - 장 소 : 청주시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8. 기타 관련서류는 청주시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200-2743) 및 건설교통국 건설과(☎200-2708)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입권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주 소	성 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b>공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b>																	
1	내덕동	777	전	48,385	921	국(건설부)	국		사무실	콘테이너	18.0㎡		장추산 황야구 (91-497-3001) 연천동 청주시 청양구 시원동 519-2 (212-4425)	신승수 이진경 청주시 " " " " " "	금회보상 " " " " " "		
1	내덕동	777	전	48,385	4,594	국(건설부)	국		표지판 플라타너스 플라타너스 미루나무 벤스	철재 30년생 5-10년생 철재	1식 7주 15주 1주 12.0m						
2	사천동	630-89	전	18955	545	국(건설부)	국		가옥 가옥 가작 보일러실 정육대 창고 세면장 화장실 감나무 모과나무 대추나무 지하수 가옥	블럭슬레이트 블럭슬레이트 목조슬레이트 목조슬레이트 콘크리트 목조슬레이트 블럭슬레이트 블럭슬레이트 5-7년생 5-7년생 5-7년생 1식 블럭슬레이트	74.2 34.4 5.4 2.6 12 6.9 2.7 1 3 1 1 2 6.3		사천동 630-89 (211-4328)	임관수 " " " " " "	조호연 " " " " " "	세임자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 (㎡)	면적 (㎡)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수용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지목	주 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b>공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b>													
	사천동	630-89						기옥	목조슬레이트	18.3	(211-4328)	이승규	
								지하수	1식	1			
								기옥	블럭슬레이트	35	사천동 630-89	강유신	
								지하수	1식	1			
								기옥	블럭슬레이트	75.8	문관수,이승규, 강유신 공동소유		
								기옥	블럭슬레이트	39	사천동 464-4	함영찬	
								기작	목조슬레이트	12	(211-6898)		
								보일리실	목조슬레이트	4.5			
								미양	콘크리트	5			
								진입로	보도블럭	5			
								포도나무	5-10년생	4			
								배나무	5-10년생	3			
								자두나무	5-10년생	1			
								복숭아나무	5-10년생	1			
								호도나무	5-10년생	1			
								감나무	5-10년생	1			
								지하수	1식	1			
2	사천동	630-89	전	16,955	2,475	국(건설부)	국						변경후 변경전
3	사천동	669	전	348	329	충청북도	국						변경전 변경후
3	사천동	669	전	348	323	충청북도	국						변경후

변동 전·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영리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필지번호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4	사천동	665-5	전	285	285	사천동 426	유필영			공장	조립식	260.0㎡	사천동 426 (011-9423-7579)	유종진 (211-7579)		변경전
4	사천동	665-5	전	285	285	청주시	국			공장 단풍나무 향고 가죽 화장실 창고 담장 사무실 배나무 상수도 대문	조립식 조립식 5-10년생 조립식 조립식 블록 콘테이너 철판 조립식 조립식 5-10년생 철재	1주 8.8㎡ 11.1㎡ 1.2㎡ 18.0㎡ 30.0㎡ 45.0㎡ 1주 1식 1식	청주시 양당구 사천동 426	유종찬 유종찬	가.보상권 "	변경후
5	사천동	690-110	전	2,725	2,725	국(건설부)	국			단풍나무 노티나무 시월나무 행두나무 주목나무 일본아카시아 졸작살 석류나무	5-10년생 10-15년생 5-10년생 5-10년생 5-10년생 5-10년생 5-10년생 5-10년생	6주 2주 1주 2주 2주 1주 1주 2주	사천동 662 (212-1373)	조진형		변경전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점물			건물 및 지점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번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b>공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b>															
	시천동	630-110							은행나무	5-10년생	1 주	시천동 662 (212-1373)	조간행		
									느티나무	10-15년생	1 주	시천동 659	김혜수		
									웅나무	5-10년생	4 주	(211-6305)			
									주목나무	5-10년생	2 주				
									해당화	5-10년생	5 주				
									은행나무	50년생	1 주	시천동 657	이상길		
5	시천동	630-110	전	2,725	2,725	국(간행부)	국		느티나무	20-25년생	2주	청주시 상당구 시천동 662	조간행	기보상결	변경 후
									단풍나무	5-10년생	2주		"	"	
									사철나무	5-10년생	1주		"	"	
									주목나무	5-10년생	2주		"	"	
									회나무	5-10년생	1주		"	"	
									종각살	5-10년생	1주		"	"	
									석류나무	5-10년생	2주		"	"	
									으름나무	5-10년생	1주		"	"	
									벗꽃나무	5-10년생	1주		"	"	
									은행나무	5-10년생	1주		"	"	
									단감나무	5-10년생	1주		"	"	
									농소화	5-10년생	1주		"	"	
									은행나무	25년생	1주		"	"	
									행두나무	5-10년생	1주		"	"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편지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b>공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데로1-12호선]</b>																
	사천동	630-110							이편나무	5-10년생	3주	창주시 상양구 사천동 662	조건행	가.보상완료		
									이편나무	5-10년생	1주	창주시 상양구 사천동 659	김혜수	가.보상완료		
									노티나무	10-15년생	1주	"	"	"		
									주목나무	5-10년생	2주	"	"	"		
									동나무	5-10년생	4주	"	"	"		
									해당화	5-10년생	5주	"	"	"		
									은행나무	50년생	1주	창주시 상양구 사천동 657	이상길	가.보상완료	변경 전	
6	사천동	665-1	도	73	73		사천동 426	유필영							변경 후	
6	사천동	665-1	도	73	73		창주시	국							변경 전	
7	사천동	665-4	전	376	376		사천동 426	유필영	창고	콘크리터	18.0 ㎡	사천동 426	유종찬			
									창고	조립식	8.8 ㎡	(211-7579)				
									사무실	조립식	45.0 ㎡	(011-9423-7579)				
									가작	조립식	11.1 ㎡					
									화장실	블록	1.2 ㎡					
									상수도	1식	1EA					
									대문	철재	1식					
									담장	철판	30.0 m					
									창고	콘크리터	7.5 ㎡	사천동 655	이송백	세입자		
									차양막	조립식	15.0 ㎡	(011-460-2306)				
									차양막바닥	콘크리트	15.0 ㎡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시설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시설물			건물 및 시설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				주 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b>공 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곽순환도로)개설공사[데로1-12호선]</b>															
	사진동	665-4							보일러설치	사무실용	45.0㎡	사진동 655	이승백	세입자	
									전기설치	380V	1식	(011-460-2306)			
									사무실	폰테이너	18.0㎡	사진동 665 (016-463-4660)	배진천	세입자	
7	사진동	665-4	진	376	376		황주시	국	차양막바닥	콘크리트	15.0㎡	황주시 상양구 사진동 보성아파트7동302호	이승백	가보호원로	변경후
									보일러설치	사무실용	45.0㎡		"	"	
									창고	폰테이너	7.5㎡		"	"	
									전기설치	380V	1식		"	"	
									영업권	송리테크	1식		"	"	
									차양	경량철골조 양철	70.0㎡		"	"	
									차양막	조립식	15.0㎡		"	"	
									영업권	원광정밀	1식	황주시 상양구 내덕동 397-22	이훈호	가보호원로	변경전
									영업권	광상정밀	1식	황주시 상양구 내덕동 508-18	박상동	가보호원로	변경전
									사무실	폰테이너	18.0㎡	황주시 상양구 사진동 655	배진천	가보호원로	변경후
8	사진동	630-82	진	50	50		사진동 426	유필영							변경전
8	사진동	630-82	진	50	50		황주시	국							변경후
9	사진동	630-81	진	43	43		국	국							변경전
9	사진동	630-81	진	43	43		황주시	국							변경후
10	사진동	663-1	진	114	114		국(건설부)	국							변경전
10	사진동	663-1	진	114	114		국(건설부)	국							변경후
11	사진동	662-1	대	13	13		사진동 662	조건행			2.4㎡	사진동 662 (212-1373)	조건행		변경전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점물			건물 및 지점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필지번호				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662-1							본채원	비닐하우스	17.7㎡	사천동 662 (212-1373)	조진행		
									정화조	1식	1 EA				
									담장	조립식	23.7㎡				
									대문	철재	1식				
									대문기둥	콘크리트	2 EA				
11	사천동	662-1	대	13	13	정주시	국		화강실	조립식	2.4㎡	정주시 상당구 사천동 662	조진행	가보상호로	변경후
									정화조	1식	1식				
									담장	조립식	18.0㎡				
									대문	철재	1식				
									본채원	비닐하우스	17.7㎡				
									바닥	보도블럭	50.0㎡				
									마당	콘크리트	12.0㎡				
									대문기둥	콘크리트	2ea				
12	사천동	664	천	13	13	국(건물부)	국								변경전
12	사천동	664	천	13	13	국(건물부)	국								변경후
13	사천동	630-83	천	830	830	정주시	국		기옥	콘테이너	36.0㎡	사천동 630-83 (212-8872)	모장근		변경전
									함관	목조슬레이트	15.0㎡				
									창고	목조슬레이트	9.6㎡				
									창고	목조슬레이트	9.5㎡				
									화장실	목조슬레이트	2.6㎡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원권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반쪽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원지번	성명		주소	종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b>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b>																
	사천동	630-83							화장실	가옥	목조슬레이트	3.0㎡	사천동 630-83	모장근		
									기각	현관	철골천막	18.8㎡	(212-8872)			
									개집	창고	목조슬레이트	3.8㎡				
									담장	화장실	철관	54.0㎡				
									수도	창고	1식	1EA				
									기목	화장실	조립식	18.9㎡	사천동 630-83	조남철		
									좌업장	화장실	철골슬레이트	63.0㎡	(011-481-2130)			
									수도	화장실	1식	1EA				
13	사천동	630-83	진	830	830		황주시	국	가옥	현관	콘테이너	36.0㎡	황주시 상당구 유령동 229-4	모장근		
									현관	창고	목조 스테트	15.0㎡				
									창고	화장실	목조 스테트	9.6㎡				
									화장실	화장실	목조 스테트	2.6㎡				
									기각	화장실	철골 천막	18.8㎡				
									화장실	화장실	목조 스테트	3.0㎡				
									개집	화장실	목조 스테트	3.8㎡				
									창고	화장실	목조 스테트	9.5㎡				
									시멘이전비	화장실	1식	1식				
									바닥	화장실	콘크리트	100.0㎡				
									화장실	화장실	2.3㎡					
									담장	담장	철관	54.0㎡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전동	630-83								수도		1식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29-4	모장근	가보현대로	
14	사전동	630-108	천	92	92	국	국			가옥	조립식	18.9㎡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상당구 사전동 630-83	조남철	"	
14	사전동	630-108	도	92	39	국(건설교통부)	국			작업장	철물 스테이트	63.0㎡	"	"	"	
15	신봉동	464-3	도	4,246	78	국(건설부)	국			수도		1식	"	"	"	
16	신봉동	8	천	813	34	국(건설교통부)	국			시설이전비		1식	"	"	"	변경전
17	신봉동	4	천	42,349	330	국(건설부)	국									변경후 미변입 제외
18	신봉동	4-2	천	15	15	국(건설부)	국									미변입 제외
18	신봉동	4-2	천	15	15	국(건설부)	국									미변입 제외
19	신봉동	464-2	도	463	463	국(건설부)	국									변경전
19	신봉동	464-2	도	463	463	국(건설부)	국									변경후
20	사전동	630-107	대	164	164	사전동 630-78	허원섭			가옥	솔라브	89.1㎡	사전동 630-78	허원섭		변경전
										본채원	비닐하우스	60.0㎡	(211-1067)			
										부속건물	조립식	10.0㎡				
										차고	비닐하우스	38.5㎡				
										수조	콘크리트	21.0㎡				
										가차	목조스레이트	3.5㎡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점물			건물 및 지점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원지번	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관동	630-107								파고라	철골	8.7㎡	사관동 630-78	허행섭		
										개경	목조	2.0㎡	(211-1067)			
										담장	조립식	60.0m				
										담장	철재	35.0m				
										대문	철재	1식				
										상수도	1식	1EA				
										정화조	1식	1EA				
										지하수	1식	2EA				
										직송	100년생	1주				
											80년생	3주				
											50년생	4주				
											30년생	2주				
											3년생	200주				
										해송	20년생	25주				
											15년생	132주				
											7년생	4주				
										진백	100년생	1주				
											50년생	1주				
											10년생	1주				
											3년생	35주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지번					번	주소	성명	종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830-107							사천동 630-78 (211-1087)	30년생 20년생 15년생 20년생 13년생 20년생 15년생 10년생 20년생 15년생 7년생 100년생 80년생 30년생 15년생 50년생 10년생 10년생 5년생 10년생	1주 1주 19주 1주 1주 2주 1주 1주 3주 1주 1주 1주 1주 2주 1주 2주 2주 1주 1주 1주 2주	황필성				
									사천동	회양목 갈나무 오일송						
									주목나무							
									황나무							
									모과나무							
									단풍							
									일본갈나무							
									박달잎홍							
									장미							
									참다래							
									담쟁이							

변동 전·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비고	
	동	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630-107							건지	30년생	100.0㎡	1주	사천동 630-78	허필섭	
									매죽	4년생	120주	2주	(211-1067)		
									목벌임종	6년생	2주	1주			
									단감	15년생	1주	1주			
									매실나무	15년생	1주	1주			
									살구나무	30년생	1주	1주			
									짜귀	10년생	1주	1주			
									소사	15년생	50주	50주			
									팬나무	10년생	20주	20주			
									은행나무	비닐하우스	60.0㎡		한주시 상양구 사천동 630-78	허필섭	기보상량표
20	사천동	630-107	대	164	157	국	충주시		분재원	철재	35.0m				
									담장	조림식	60.0m				
									담장	목재	2.0m				
									개집	철골	8.7㎡				
									파고라	목조스레트	3.5㎡				
									가죽	콘크리트	21.0㎡				
									수조	조림식	10.0㎡				
									부속건물	스라브	89.1㎡				
									가옥	철재	1식				
									대문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영원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경물			건물 및 지경물 소유자		비고
	동	필지번호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포1-12호선]														
	사관동	630-107							시월나무	20년생	1주	충주시 상당구 사관동 630-78	허월섭	기보상행료
									차고	비닐하우스	38.5㎡			
									목백일홍	6년생	120주			
									황나무	100년생	1주			
									모과나무	80년생	1주			
									단풍나무	30년생	2주			
									일본강나무	17년생	1주			
									목백일홍	50년생	2주			
									목백일홍	12년생	2주			
									장미	12년생	1주			
									참디레	7년생	1주			
									상수도		1식			
									주목나무	9년생	1주			
									진박	5년생	35주			
									당쟁이	12년생	2주			
									단감	8년생	2주			
									매실나무	17년생	1주			
									실구나무	17년생	1주			
									짜귀나무	30년생	1주			
									소시나무	12년생	1주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영권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지번	원지번		주소	성명	종도			구조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원동	630-107						펜나무	17년생	50주		가.포상호로	
								은행나무	12년생	20주			
								조경시설물	석재	2식			
								마당	보도블럭	80.0㎡			
								수도대	콘크리트	1식			
								간디	100.0㎡	100.0㎡			
								진벽	50년생	1주			
								작송	80년생	3주			
								주목나무	17년생	1주			
								작송	100년생	1주			
								지하수	268	268			
								작송	50년생	4주			
								작송	30년생	2주			
								작송	5년생	200주			
								해송	22년	25주			
								해송	17년생	132주			
								매죽	30년생	1주			
								진벽	100년생	1주			
								진벽	12년생	1주			
								정화조		1식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역	지적 (㎡)	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점물			건물 및 지점물 소유자		수용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지번호				주 소	성 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b>공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b>															
	사천동	630-107							시월나무	30년생	1주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30-78	허필선	기포상영로	
									회양목	15년생	19주		"	"	
									감나무	20년생	1조		"	"	
									감나무	15년생	1주		"	"	
									오염층	20년생	1주		"	"	
									오염층	17년생	1주		"	"	
									오염층	12년생	1주		"	"	
									주목나무	22년생	3주		"	"	
									해송	9년생	4주		"	"	
21	신봉동	4-1	전	109	109		국(건설부)	국							변경전
21	신봉동	4-1	전	109	109		국(건설부)	국							변경후
22	사천동	630-84	전	986	986		청주시	국	가목	블락슬레이트	51.7 ㎡	내덕1동 737-10	이성해		변경전
									참고	목조슬레이트	28.0 ㎡	(016-484-6216)			
									참고	목조슬레이트	24.8 ㎡				
									가죽	철골슬레이트	32.0 ㎡				
									화장실	목조슬레이트	4.5 ㎡				
									탕장	목조	15.0 ㎡				
									계집	목조	5.8 ㎡				
									계집	철골	7.3 ㎡	사천동 630-84	이남용	세입자	
									대문	철재	1 식	(011-481-3632)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관급지 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공사명: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시진동	630-84							담장	조립식	8.0 m	사건동 630-84	이남용	세입자	
									담장	철판	8.0 m	(011-481-3632)			
									담장	강관철조판	20.0 m				
									지하수	1식	1 EA				
									살구나무	5-10년생	1 주				
									버리떡나무	5-10년생	1 주				
									자두나무	5-10년생	2 주				
									사과나무	5-10년생	1 주				
									연산홍	5-10년생	1 주				
									두릅나무	5-10년생	100 주				
									가옥	콘테이너	18.0 ㎡	내수음 마산리 123	김용경		
									창고	철골슬래이트	12.0 ㎡	진흥@ 105-108			
									창고	철골슬래이트	10.5 ㎡	(018-423-8081)			
									차양막	천막	8.0 ㎡				
									지하수	1식	1 EA				
									담장	목조	45.5 m				
										조립식	19.0 m				
									대문	철판	4.0 m				
									은행나무	1식	1 EA				
										5-10년생	5 주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영권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적 (㎡)	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편입지 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공사명: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시원동	630-84							대추나무	5-10년생	2주	내수물 마수리 123	김동정		
									두릅나무	5-10년생	75주	진흥@105-108			
									지두나무	5-10년생	2주	(018-423-8081)			
									목련	3-5년생	2주	시원동 630-84	인봉신	세입지	
									계집	철관	5.4㎡				
										목조	2.0㎡	(011-489-8456)			
									계집	목조	5.8㎡	청주시 상당구	이성희	가보상호주	반경후
22	시원동	630-84	전	986	986		청주시	국	창고	목조 스테트	28.0㎡	내북동 737-10	"	"	
									창고	목조 스테트	24.8㎡	"	"	"	
									가각	철관 스테트	32.0㎡	"	"	"	
									화장실	목조 스테트	4.5㎡	"	"	"	
									담장	목조	15.0㎡	"	"	"	
									가옥	벽력 스테트	51.7㎡	"	"	"	
									지두나무	5-10년생	2주	"	"	"	
									보리독나무	5-10년생	1주	"	"	"	
									삼나무	5-10년생	1주	"	"	"	
									사과나무	5-10년생	1주	"	"	"	
									연산홍	5-10년생	1주	"	"	"	
									두릅나무	5-10년생	100주	"	"	"	
									대문	철재	1식	청주시 상당구 내북1동 316-7	이남용	"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인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원지번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630-84							지하수						
									담장	조림식	1식		청주시 상당구 내외동 310-7	이남용	
								시설표이전비			8.0m				
								개검		철골	1식				
								담장		강관 철조망	7.3㎡				
								담장		철판	20.0m				
								컨테이너		철재(3×6m)	8.0m				
								두릅나무		5-10년생	2ea				
								가옥		75주			청원군 내수동 대산리 123 건물@105-1	김용정	
								목련		콘테이너	18.0㎡				
								영양권		3-5년생	2주				
								참고		오창고물상	1식				
								지두나무		철골 스테트	12.0㎡				
								참고		5-10년생	2주				
								대추나무		철골 스테트	10.5㎡				
								은행나무		5-10년생	2주				
								대문		5-10년생	5주				
								담장		철관	1식				
								담장		조림식	4.0m				
								담장		조림식	19.0m				
								담장		목조	45.5m				

변동 전·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시설물			건물 및 시설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관입지 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630-84								지하수 차양막	철막	1식	청원군 내수면 도시리 128-1번지(105-1)	김충성	가보채양로	
23	사천동	630-106	대	14	14	사천동 630-78	허월성			개집	목조	8.0㎡	청주시 상당구 시전동 630-84	"	"	변경전
23	사천동	630-106	대	14	14	청주시	국			개집	철골	2.0㎡	"	안병선	"	변경후
24	사천동	630-105	대	73	73	부산, 부산, 진구, 부진1동925	정영자			개집	3×6m	5.4㎡	"	"	"	변경전
24	사천동	630-105	대	73	73	청주시	국			컨테이너		18.0㎡	"	"	"	변경후
25	사천동	630-85	도	29	29	국(건설부)	국			시설이전버		1식	"	"	"	변경전
25	사천동	630-85	도	29	29	국(건설부)	국									변경후
26	사천동	630-104	대	79	79	사천동 350	허충성			창고	블럭슬레이트	23.9㎡	사천동 350 (211-4087)	허충성		변경전
										속사	목조슬레이트	7.4㎡	"	"	"	
										당장	조림식	5.0m	"	"	"	
										당장	웬스	16.0m	"	"	"	
26	사천동	630-104	대	79	79	청주시	국			당장	조림식	5.0m	청주시 상당구 시전동 350	허충성	가보채양로	변경후
										창고	블럭 스테이트	23.9㎡	"	"	"	
										속사	목조 스테이트	7.4㎡	"	"	"	
										당장	웬스	16.0m	"	"	"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물			건물 지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필지번				주 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포1-12호선]																
	사천동	630-102							후지동나무	10년생	4주	사천동 404 (272-6697)	조익형			
									대추나무	5년생	5주					
									앵두나무	20년생	5주					
										5년생	2주					
										15년생	1주					
									장미	4년생	2주					
									목단	4년생	1주					
									은행나무	5년생	1주					
									단풍나무	8년생	2주					
									골담초	4년생	3주					
29	사천동	630-102	대	135	110	충주시	국		가옥	벽돌기외	50.6㎡	충주시 불암교 사창동 105-12(양천동가)	조익형	가:보성관리	변경후	
									가옥	벽돌스레트	21.0㎡					
									가작	목조스레트	14.0㎡					
									화장실	벽돌스레트	5.0㎡					
									세면장	벽돌스레트	4.0㎡					
									보일러실	목조스레트	10.0㎡					
									창고	목조스레트	2.3㎡					
									세면장	목조스레트	4.0㎡					
									장독대	돌재	7.5㎡					
									장독대	콘크리트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지번	성명		종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630-102							마당	보도블럭	45.0㎡	장주시 동덕구 사정동 185-12(행정지과)	조익형	가보영원회	
									담장	조립식	22.5㎡				
									지하수		1식				
									두층나무	33년	4주				
									두층나무	21년	4주				
									후지뽕나무	13년	4주				
									후지뽕나무	8년	5주				
									대추나무	23년	5주				
									대추나무	8년	2주				
									앵두나무	18년	1주				
									앵두나무	7년	2주				
									정미		1주				
									죽단		1주				
									은행나무		1주				
									단풍나무		2주				
									필담초		3주				
30	사천동	630-89	전	16,955	16,955	국(건설부)	국								임대주택2 외 용 목 재 의 변 경 전
31	사천동	630-101	대	306	306	사천동 630-10	우영택		가옥	블럭슬레이트	104.4	사천동 630-10	우영택		변경전
									가옥	블럭슬레이트	132.6	(211-0728)			
									가옥	블럭슬레이트	81.1㎡				

변동 전·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630-101							부속건물	목조슬레이트	4.0㎡		김태원	세입자	
									부속건물	목조슬레이트	2.3㎡	(213-5349)	김태원	세입자	
									화장실	목조슬레이트	1.4㎡	(213-9184)	장귀권	세입자	
									화장실	목조슬레이트	1.3㎡	(215-9094)	김영자	세입자	
									보일러실	목조슬레이트	10.8㎡		유수복	세입자	
									축사	목조슬레이트	8.0㎡		양영석	세입자	
									담장	콘크리트	47.3㎡		박순희	세입자	
									상수도	1식	3 EA		유우영	세입자	
									옹어나물	5-10년생	3 주		문재덕	세입자	
									은행나무	5-10년생	2 주		진용준	세입자	
									두릅나무	5-10년생	10 주				
									밤나무	5-10년생	2 주				
									매실나무	5-10년생	1 주				
									두충나무	5-10년생	1 주				
									호도나무	5-10년생	1 주				
									미꾸라지	5-10년생	4 주				
									복숭아나무	5-10년생	1 주				
									영나무	5-10년생	1 주				
31	사천동	630-101	대	306	306		정주시	국	가옥	브릭스래트	104.4㎡	정주시 상당구 사천동 630-10	우영택	가·보상면적	변경후
									가옥	브릭스래트	132.6㎡				

변동 전·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인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점물			건물 및 지점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필지번				주 소	성 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630-101								가옥	벽돌스레트	81.1㎡	충주시 상당구 사천동 630-10	우영택	가·보상영토	
										부속건물	목조스레트	4.0㎡			"	
										부속건물	목조스레트	2.3㎡			"	
										화장실	목조스레트	1.4㎡			"	
										화장실	목조스레트	1.3㎡			"	
										보일러실	목조스레트	10.8㎡			"	
										축사	목조스레트	8.0㎡			"	
										담장	웁스	47.3㎡			"	
										상수도	3ea				"	
										옹어나우	3주				"	
										은행나무	2주	30년			"	
										두릅나무	10주	30년			"	
										밤나무	2주	30년			"	
32	신봉동	464	도	6,067	9	국(건설부)	국								미판입 제외	
33	신봉동	1	천	4,777	336	국(건설부)	국								미판입 제외	
34	신봉동	1-3	천	1,151	1,151	국(건설부)	국								변경 전	
34	신봉동	1-3	천	1,151	1,151	국(건설부)	국								변경 후	
35	사천동	630-88	천	514	514	국(건설부)	국			가옥	블럭슬레이트	92.2㎡	사천동 630-88	전일만	변경 전	
										가옥	블럭슬레이트	41.3㎡	사천동 (016-9520-2927)			
										창고	목조슬레이트	42.0㎡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주 소	성 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630-88								가옥	목조슬래이트	9.8 ㎡	사천동 630-88	전일만		
										화장실	블럭슬래이트	2.3 ㎡	(016-9520-2927)			
										보일러실	목조슬래이트	1.5 ㎡				
										장독대	콘크리트	1.0 ㎡				
										미당	콘크리트	22.5 ㎡				
										지하수	1식	1 EA				
										밭나무	5-7년생	2 주				
										두릅나무	5-7년생	1 주				
										배나무	5-7년생	1 주				
										대추나무	5-7년생	1 주				
										앵두나무	5-7년생	1 주	(211-6091)	인영호	세입자	
										감나무	5-7년생	1 주	(213-7382)	희경	세입자	
										두릅나무	5-7년생	30 주		김인환	세입자	
35	사천동	630-88	전	514	514		국(건설부)	국								변경후
36	사천동	630-87	전	1,239	1,239		국(건설부)	국		가옥	블럭슬래이트	72.0 ㎡	사천동 630-87	김진려		변경전
										가옥	블럭슬래이트	52.8 ㎡	(211-5989)			
										장고	목조슬래이트	32.0 ㎡				
										장고	블럭슬래이트	6.0 ㎡				
										축사	목조슬래이트	21.0 ㎡				
										가작	목조슬래이트	14.0 ㎡				

변동 전·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				주 소	성 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630-87							장독대	콘크리트	2.0㎡		사천동 630-87	김진려	
									화장실	목조슬래이트	2.3㎡		(211-5989)		
									정고	목조	5.0㎡				
									마당	보도블럭	54.0㎡				
									지하수	1식	1EA				
									앵두나무	5년생	1주				
									배나무	3년생	1주				
									복숭아나무	5년생	4주				
									두릅나무	4년생	2주				
									주목나무	10년생	1주				
									꽃나무	3년생	5주				
									갈나무	13년생	2주				
									라일락	5년생	1주				
									강미	5년생	1주				
									대추나무	10년생	5주				
									살구나무	15년생	1주				
									매실나무	10년생	2주				
									자두나무	10년생	1주				
									뽕나무	5년생	1주				
									오가피나무	5년생	1주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입력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지번		지번	주 소	성 명	용도	구조	수량	주 소	성 명			
공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630-87						추지상목	4년생	2 주	사천동 630-87 (211-5989)	김권려		
								가옥	블럭슬레이트	63.1 ㎡	사천동 630-87	최재도		
								축사	블럭슬레이트	39.2 ㎡	(016-685-5437)			
								화장실	블럭슬레이트	4.4 ㎡				
								보일러실	블럭슬레이트	2.6 ㎡				
								가작	블럭슬레이트	10.8 ㎡				
								담장	조립식	25.0 m				
								마당	콘크리트	36.0 ㎡				
								밭나무	10년생	1 주				
								배나무	5년생	1 주				
								감나무	10년생	1 주				
								가옥	블럭슬레이트	55.0 ㎡	사천동 464-4	김원호		
								작업장	철골슬레이트	222.8 ㎡	(253-6267)			
								부속건물	조립식	7.5 ㎡				
								창고	블럭슬레이트	32.0 ㎡				
								보일러실	가작	10.5 ㎡				
								마당	콘크리트	198.2 ㎡				
								마당	모도블럭	40.0 ㎡				
								라판	철재	1 식				
								샷타	전동식	1 식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궐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630-87							출입문	관화유리	1식	사천동 464-4 (253-6267)	김원호		
									동력전기		1식				
									정화조		1식				
									지하수	1식	1EA				
									단풍나무		4주				
									은행나무		8주				
									복숭아나무		3주				
									감나무		4주				
									앵두나무		3주				
									대추나무		5주				
									사과나무		2주				
									석류나무		8주				
									시월나무		2주				
									신수유		3주				
									포도나무		3주				
									향나무		2주				
									요가피나무		1주				
									회양목		6주				
									두릅나무		7주				
									기육		74.0㎡	사천동 630-87 (211-2833)	조상복		
									불확실레이트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원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원지번	편입지번		주소	성명	종도	구조	수량			주소
<b>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b>																
	사전동	630-87								참고	목조슬레이트	13.0 ㎡	사전동 630-87 (211-2333)	조상복		
										축사	목조슬레이트	11.3 ㎡				
										가작	철골슬레이트	11.8 ㎡				
										외장실	철골슬레이트	2.3 ㎡				
										참고	목조슬레이트	7.4 ㎡				
										장독대	콘크리트	6.3 ㎡				
										마당	콘크리트	85.0 ㎡				
										담장	조립식	28.3 m				
										수도	1 식					
										경회조	1 식					
										김나무	5-7년생	2 주				
										두릅나무	5-7년생	70 주				
										단풍나무	5-7년생	1 주				
										향나무	5-7년생	1 주				
										장미	5-7년생	1 주				
										회양목	5-7년생	2 주				
36	사전동	630-87	전	1,239	1,239		국(간신평부)	국		가옥	벽돌 스투트	72.0 ㎡	충주시 상영구 사전동 630-87	김찬려	가보상행보	변경후
										가옥	벽돌 스투트	52.8 ㎡				
										참고	목조스래트	32.0 ㎡				
										참고	목조스래트	6.0 ㎡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 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 확산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630-87							축사	목조스레트	21.0㎡	황주시 상당구 사천동 630-87	김관덕	기 포함외표	
									기적	목조스레트	14.0㎡			"	
									장독대	콘크리트	2.0㎡			"	
									화장실	목조스레트	2.3㎡			"	
									창고	목조	5.0㎡			"	
									마당	보도블럭	54.0㎡			"	
									지하수		1식			"	
									앵두나무		1주			"	
									배나무		1주			"	
									복숭아나무		4주			"	
									두릅나무		2주			"	
									주목나무		1주			"	
									웃나무		7주			"	
									감나무		2주			"	
									라일락		2주			"	
									장미		1주			"	
									대추나무		5주			"	
									살구나무		2주			"	
									매실나무		3주			"	
									지두나무		1주			"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필지번호				필지번호	성명		종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630-87							반루덕나무	1주			청주시 상당구 시전동 630-87	김진려	가 보상영토	
									오가피나무	1주						
									산뽕나무	5주						
									가옥	63.1㎡	벽력 스테트		청주시 상당구 시전동 630-87	최재도		
									축사	39.2㎡	벽력 스테트					
									외장칠	4.4㎡	벽력 스테트					
									보일러실	2.6㎡	벽력 스테트					
									가작	10.8㎡	벽력 스테트					
									담장	25.0㎡	조립식					
									마당	36.0㎡	콘크리트					
									밤나무	1주						
									배나무	1주						
									감나무	1주						
									두릅나무	24주						
									가옥	55.0㎡	벽력 스테트		청주시 상당구 시전동 630-87	김원호		
									작업장	167.8㎡	철골스레트					
									부속건물	7.5㎡	조립식					
									창고	32.0㎡	벽력 스테트					
									보일러실	10.5㎡	가작					
									마당	198.2㎡	콘크리트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번	원지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관동	630-87							이당	보도면적	40.0㎡	충주시 상양구 시전동 630-87	김원호	가도상회	
									간판	활재	1식				
									삿터	전동식	1식				
									출입문	강화유리	1식				
									정화조		1식				
									지하수		1식				
									영양권	가나침주사디	1식				
									계집		1ea				
									단풍나무		4주				
									은행나무		8주				
									복숭아나무		3주				
									감나무		4주				
									행두나무		3주				
									대추나무		5주				
									시과나무		2주				
									석류나무		8주				
									사철나무		2주				
									산수유		3주				
									포도나무		3주				
									황나무		2주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편입지 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시원동	630-87							오기피나무							
									연신홍							
									두릅나무							
									가옥	가옥	벽돌 스투트	92.2㎡	2주	충주시 상당구 서진동 630-87	김원준	가.보상영토
									가옥	가옥	벽돌 스투트	41.3㎡	6주			
									창고	창고	목조 스투트	42.0㎡	7주			
									가작	가작	목조 스투트	9.8㎡			전영민	
									회경실	회경실	목조 스투트	2.3㎡				
									보일리실	보일리실	목조 스투트	1.5㎡				
									장독대	장독대	콘크리트	1.0㎡				
									마당	마당	콘크리트	22.5㎡				
									지하수	지하수	1식	1식				
									밭나무	밭나무	2주	2주				
									두릅나무	두릅나무	1주	1주				
									배나무	배나무	1주	1주				
									대추나무	대추나무	1주	1주				
									행두나무	행두나무	1주	1주				
									감나무	감나무	1주	1주				
									두릅나무	두릅나무	23주	23주				
									별당 (부칭남)	별당 (부칭남)	2식	2식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영권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수용 권리	비고	
	동	원지번				권리지 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 소	성명	용도			구조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630-87							가옥	벽돌스레트	18.95㎡	경주시 상당구 시천동 630-87	가보상행표	
			지하수						지하수		1식		"	"
			법당						법당		1식		"	"
			맹화						맹화		1장		"	"
			가옥						가옥	벽돌스레트	39.0㎡	경주시 상당구 시천동 630-87	형성건	"
			가옥						가옥	벽돌스레트	18.95㎡		"	"
			가죽						가죽	철파이프천막	12.0㎡		"	"
			보일러실						보일러실	벽돌스레트	4.5㎡		"	"
			마당						마당	콘크리트	5.0㎡		"	"
			진입로						진입로	보도블럭	5.0㎡		"	"
			지하수						지하수		1식		"	"
			포도나무						포도나무		4주		"	"
			배나무						배나무		3주		"	"
			자두나무						자두나무		1주		"	"
			복숭아나무						복숭아나무		1주		"	"
			호도나무						호도나무		1주		"	"
			강나무						강나무		1주		"	"
			가옥						가옥	벽돌스레트	74.0㎡	경주시 상당구 시천동 630-87	조상복	"
			창고						창고	철파이프스레트	13.0㎡		"	"
			축사						축사	벽돌스레트	11.3㎡		"	"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정물			건물 및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필지번호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b>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b>															
38	사전동	630-99	전	61	61	경주시	국								변경후
39	사전동	630-111	전	116	116	충청북도 영광동1502 신라타운8-201	김학신								변경전
39	사전동	630-111	전	116	106	경주시	국		가옥	벽돌스레트	80.0㎡		경주시 상명구 영광동1502 신라타운@12-103	김학신	가옥상량리 변경후
									담장	조립식	42.0㎡			"	"
									가작	목조	16.2㎡			"	"
									화장실	벽돌스레트	4.0㎡			"	"
									지하수	1식	1식			"	"
									축사	벽돌스레트	33.0㎡			"	"
40	신봉동	463-1	전	8,910	49	국(건설부)	국								미분양 지외
41	신봉동	463-69	전	760	760	국(건설부)	국								변경전
41	신봉동	463-69	전	760	760	국(건설부)	국								변경후
42	사전동	630-68	전	108	108	사전동 630-21	이상권		가옥	벽돌슬레이트	101.6㎡		내덕동 771 (259-3679)	이상권	변경전
									가옥	벽돌슬레이트	85.1㎡				
									가작	슬레이트	12.5㎡				
									담장	조립식	42.0㎡			(211-1215)	세입자
									가작	목조	16.2㎡			노재석	세입자
									화장실	벽돌슬레이트	4.0㎡			임예춘	세입자
									창독대	콘크리트	6.6㎡			고정은	세입자
42	사전동	630-68	전	108	81	경주시	국		지하수	1식	1 EA				변경후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 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평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43	사천동	630-98	전	85	85	내리동748-2 보성아파트-101	이상권								변경전
43	사천동	630-98	전	85	73	청주시	국		가옥	브릭스레트	132.0㎡		이상권	가보상권	변경후
		630-98	전						가옥	센라이트	12.5㎡		"	"	
									정독대	콘크리트	6.6㎡		"	"	
									지가수도	지하수	1식		"	"	
									복상및용품		1식		고정운	가보상권	
44	사천동	630-97	전	194	194	청주시	국		채소밭	비닐하우스	2 동		박은성 011-462-2635		변경전
44	사천동	630-97	전	194	194	청주시	국								변경후
45	사천동	630-59	전	560	560	국(건설부)	국								변경전
45	사천동	630-59	전	560	560	국(건설부)	국								변경후
46	사천동	630-58	전	778	778	국(건설부)	국		가옥	블럭슬레이트	68.8㎡		김홍근		변경전
									가옥	블럭슬레이트	33.3㎡			(211-4638)	
									가옥	블럭슬레이트	21.6㎡				
									가라	목조슬레이트	10.5㎡				
									축사	블럭슬레이트	63.9㎡				
									축사	철골슬레이트	176.3㎡				
									화장실	블럭슬레이트	4.0㎡				
									축사바닥	콘크리트포장	165.5㎡				
									마당	보도블럭	15.0㎡				
									계경	콘크리트	3.0㎡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번	원지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전동	630-58							개집	목조	2.0㎡	사전동 630-58 (211-4638)	김홍운	
									당장	조립식	38.1㎡			
									수도		1식			
									아카시아		2주			
									플라타너스		4주			
									밤나무		6주			
									느티나무		1주			
									죽림나무		6주			
									사철나무		1주			
									매실나무		4주			
									감나무		4주			
									철쭉나무		1주			
									대추나무		1주			
									장미		3주			
									복숭아나무		3주			
									배나무		7주			
									단풍나무		2주			
									무궁화		21주			
									지두나무		2주			
									산수유		19주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번	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공 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시천동	630-58								행두나무	5-10년생	1 주	시천동 630-58	김홍은		
										살구나무	5-10년생	2 주	(211-4638)			
										포도나무	5-10년생	2 주				
										은행나무	5-10년생	1 주				
										두릅나무	5-10년생	5 주				
										옥단	5-10년생	3 주				
										모과나무	5-10년생	1 주				
										진나무	5-10년생	3 주				
										참나무	5-10년생	3 주				
										가옥	블럭슬레이트	92.4 ㎡	시천동	김재현		
										창고	블럭슬레이트	50.3 ㎡	평화@ 206호			
										보일러실	목조슬레이트	6.0 ㎡	(275-7567)			
										가죽	목조슬레이트	17.5 ㎡	(019-475-7567)			
										지하수	1 식	1 EA				
										담장	조립식	11.0 m				
										작업장	철골슬레이트	72.0 ㎡	시천동 630-58	이인호		
										담장	철재	7.0 m	(011-9849-9820)			
										대문	철재	1 식				
										작업장바닥	콘크리트	72.0 ㎡				
										개나리	5-10년생	2 주				

변동 전·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 (㎡)	면적연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				주 소	성 명	용도	구조	수량	주 소	성 명				
공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630-58								복숭아나무	5-10년생	1 주	사천동 630-58	이인호		
										비지나무	5-10년생	2 주	(011-9849-9920)			
										앵두나무	5-10년생	1 주				
										단풍나무	5-10년생	2 주				
										무화과나무	5-10년생	1 주				
										대추나무	5-10년생	1 주	김재원, 이인호			
										밤나무	5-10년생	1 주	권용소유			
										신수유	5-10년생	3 주				
										영나무	5-10년생	1 주				
										사할나무	5-10년생	1 주				
										은행나무	5-10년생	1 주				
										진나무	5-10년생	1 주				
										느티나무	5-10년생	1 주				
										황죽나무	5-10년생	1 주				
46	사천동	630-58	천	778	778		국(건설부)	국		기옥	브릭스레트	68.8㎡	영주시 삼당구 사천동 630-58	김홍만	가보상량료	비고
										기옥	브릭기와	38.3㎡		"	"	
										축사	브릭스레트	21.6㎡		"	"	
										기각	목조판마이트	10.5㎡		"	"	
										축사	브릭스레트	63.9㎡		"	"	
										축사	목조스레트	176.3㎡		"	"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역	지적 (㎡)	면적연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점물			건물 및 지점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필지번호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 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원동	630-58							화장실	브릭스레트	4.0㎡	영주시 신명구 시안동 630-58	김홍균	가.보상영구	
									축사바닥	콘크리트포장	165.5㎡			"	
									미방	보도블럭	49.5㎡			"	
									진입로포장	보도블럭	99.0㎡			"	
									지하수	관정	1식			"	
									개집	콘크리트	3.0㎡			"	
									개집	목조	2.0㎡			"	
									당장	조립식	38.1㎡			"	
									수도		1식			"	
									방목장물통	콘크리트	1식			"	
									경운기		2ea			"	
									카터기	벗짐	1대			"	
									축산보상	한우	140마리			"	
									관상수		8주			"	
									프라이더스		4주			"	
									밤나무	30년	3주			"	
									밤나무	20년	3주			"	
									노티나무		1주			"	
									죽림나무		4주			"	
									죽림나무		2주			"	

변동 전·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권입지 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630-58							산수유			19주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30-58	김봉환	기보상업토	
									앵두나무			1주			"	
									살구나무			2주			"	
									포도나무			2주			"	
									은행나무			1주			"	
									두릅나무			5주			"	
									목단			3주			"	
									모과나무			1주			"	
									진나무			3주			"	
									원나무			3주			"	
									사철나무			1주			"	
									매실나무			4주			"	
									감나무			4주			"	
									철쭉나무			1주			"	
									대추나무			1주			"	
									강미			3주			"	
									복숭아나무			3주			"	
									배나무			7주			"	
									단풍나무			2주			"	
									무궁화			21주			"	

변동 전·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입권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권리지 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궤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시천동	630-56							지두나무			2주	충주시 상영구 시천동 630-56	김홍윤	가·보상권	
									산수유			19주		"	"	
									팽나무			1주		"	"	
									살구나무			2주		"	"	
									포도나무			2주		"	"	
									은행나무			1주		"	"	
									두릅나무			5주		"	"	
									목단			3주		"	"	
									모과나무			1주		"	"	
									진나무			3주		"	"	
									참나무			3주		"	"	
									가옥	벽스레트	92.4㎡		충주시 상영구 상영동 272-2 부 401(01)2호	김재원	"	
									창고	벽스레트	50.3㎡			"	"	
									보일러실	목조스레트	6.0㎡			"	"	
									가작	목조스레트	17.5㎡			"	"	
									지하수		1식			"	"	
									수도		1식			"	"	
									담장	조립식	11.0m			"	"	
									대문	목재	1식			"	"	
									작업장바닥	콘크리트	72.0㎡			"	"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지목 (㎡)	소유권 이외의 권리	토지소유자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수용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	필지번 번				주 소	성 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 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전동	630-58												
									개나리		2주		장재원	가보상당토
									복숭아나무		1주		"	"
									비자나무		2주		"	"
									앵두나무		1주		"	"
									단풍나무		2주		"	"
									무화과나무		1주		"	"
									대추나무		1주		"	"
									밤나무		1주		"	"
									산수유		3주		"	"
									임나무		1주		"	"
									사철나무		1주		"	"
									은행나무		1주		"	"
									주목나무		1주		"	"
									느티나무		1주		"	"
									살구나무		2주		"	"
									황나무		2주		"	"
									회양목		11주		"	"
									황쪽나무		1주		"	"
									활상 및 옹골		1식		이인호	"
47	사전동	470	진	17,791	30	국(건설부)	국						청주시 상당구 사전동 630-58	이인호 외

변동 전·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필지번				주 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48	서천동	470-2	전	598	598	국(건설부)	국								변경전	
48	서천동	470-2	전	598	598	국(건설부)	국								변경후	
49	서천동	459-2	전	506	506	국(건설부)	국								변경전	
								기옥					53.6㎡	서천동 459-2	오귀현	
								기옥					132.0㎡	(211-4814)		
								창고					18.0㎡	(019-9766-3838)		
								화장실					5.0㎡			
								창고					12.0㎡			
								지하수					1 EA			
								담장					30.0㎡			
								무궁화					650 주		이상년	세입자
								무궁화					4 주		최수옥	세입자
								감나무					3 주			
								은행나무					3 주			
								대추나무					5 주			
								갯나무					1 주			
								왕나무					1 주			
								단풍나무					38 주			
								관상수					3 주			
								복숭아나무					1 주			
								배나무					1 주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권리지 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49	사전동	459-2		권	506	506	국(건설부)	국								변경후
									가옥	벽스레트	53.6㎡	영주시 성명구 시전동 459-2	오귀현			
									가옥	벽스레트	132.0㎡					
									광고	목조스레트	18.0㎡					
									화장실	목조스레트	5.0㎡					
									장광	벽돌스라브	12.0㎡					
									마당	콘크리트	33.0㎡					
									진입로포장	콘크리트	33.0㎡					
									지하수		1식					
									담장	조립식	30.0m					
									무궁화나무	묘목	650주					
									무궁화나무	5~10년	4주					
									갈나무		3주					
									은행나무		3주					
									대추나무		5주					
									웃나무		10주					
									왕나무		1주					
									단풍나무		38주					
									진나무		3주					
									복숭아나무		1주					
									배나무		1주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459-2							주택나무			4주	청주시 상당구 시천동 459-2	오거현	가.보상완료	
									방나무			2주	"	"	"	
									연산봉			5주	"	"	"	
									농소화			5주	"	"	"	
50	사천동	459-4	대	64	64		청주시	국	사무실	조립식	53.3㎡		사천동 459-1	삼진개발		변경전
									가작	조립식	17.5㎡		(211-5400)			
									담장	철재	30.0m					
50	사천동	459-4	대	64	64		청주시	국	사무실	조립식	53.3㎡		청주시 상당구 봉명동 1109	민재홍	가.보상완료	변경후
									가작	철파이프콘크리트	17.5㎡		"	"	"	
									작업장	경량철골조 황색지 붕	65.0㎡		청주시 상당구 보은동 도화동광안리지 (4179-119)	삼진개발 (홍성호)	"	
									담장	철지	30.0m		"	"	"	
51	사천동	459-5	도	6	6		사천동 422	나병철								변경전
51	사천동	459-5	도	6	6		청주시	국								변경후
52	사천동	460-1	전	447	447		국(건설부)	국								변경전
52	사천동	460-1	전	447	447		국(건설부)	국								변경후
53	사천동	647-1	도	273	273		국(건설부)	국								변경전
53	사천동	647-1	도	273	273		국(건설부)	국								변경후
54	사천동	462-7	도	66	66		사천동 422	나상철								변경전
54	사천동	462-7	도	66	66		청주시	국	가옥	브릭스레트	57.0㎡		청주시 상당구 시천동 401-16	박노성	가.보상완료	변경전
									축사	철골스레트	102.3㎡		"	"	"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관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번	주소		성명	종도	구조	수량	주소		
공 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진동	462-7							창고	목조스래트	27.0㎡	경주시 상당구 서천동 401-16	박노성	가.보성명호	
									창고	철골철막	6.0㎡		"	"	
									가짜	목조스래트	5.3㎡		"	"	
									창고	목조스래트	6.0㎡		"	"	
									화장실	목조스래트	1.4㎡		"	"	
									지하수		1식		"	"	
									은행나무		73주		"	"	
									얼나무		3주		"	"	
									살구나무		1주		"	"	
									두홍나무		26주		"	"	
									강나무		1주		"	"	
									주목나무		1주		"	"	
									무궁화나무		2주		"	"	
									배나무		1주		"	"	
									자두나무		2주		"	"	
									대추나무		1주		"	"	
									단풍나무		1주		"	"	
									귀룽나무		1주		"	"	
									노나무		1주		"	"	
									떡갈		1주		"	"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역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등 원지번	편입지 번				주 소	성 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 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55	사천동	462-6	담	59	59	사천동 422	나병철								변경전
55	사천동	462-6	담	59	59	경주시	국								변경후
56	사천동	462-3	천	264	264	국(건설부)	국								변경전
56	사천동	462-3	천	264	264	국(건설부)	국								변경후
57	사천동	461	천	417	417	국(건설부)	국								변경전
						가족		블럭슬레이트	64.5㎡						변경전
						개장		철재	16.0㎡						변경전
						장독대		콘크리트	2.0㎡						변경전
						담장		조립식	12.0㎡						변경후
						지하수		1식	1EA						변경전
						정화조		1식	1EA						변경후
															변경전
57	사천동	461	천	417	417	국(건설부)	국								변경후
58	사천동	651-13	구	817	817	국(농림부)	국								변경전
						가족		블럭슬레이트	115.9㎡						변경전
						가족		목조슬레이트	24.7㎡						변경전
						창고		목조슬레이트	16.4㎡						변경전
						비닐하우스		철재	1동						변경전
						보일러실		목조슬레이트	2.3㎡						변경전
						지하수		1식	1EA						변경전
						사과나무		5-10년생	3주						변경전
						감나무		5-10년생	1주						변경전
						배나무		5-10년생	7주						변경전

변동 전·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필지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651-13								두충나무	5-10년생	1주	사천동 459-2	김영순		
										무궁화	5-10년생	11주	(011-482-6541)			
										밤나무	5-10년생	4주				
										대추나무	5-10년생	5주				
										단풍나무	5-10년생	1주				
										황나무	5-10년생	1주				
										외솔나무	5-10년생	2주	내덕(동 748	우종근		
										가옥	조림식	67.6㎡	(253-3084)			
										지하수	1식	1EA				
										황나무	5-10년생	1주				
58	사천동	651-13	구	817	817	국(농림부)	국			가옥	브릭스레트	64.5㎡	영구채, 영남구 내덕1	우종근	가보상권	변경후
										계집	출재	16.0㎡	동748	"	"	
										정육대	큰크리트	2.0㎡		"	"	
										담장	조림식판넬	12.0m		"	"	
										지하수		1식		"	"	
										정화조		1식		"	"	
										가옥	조림식	67.6㎡		"	"	
										지하수		1식		"	"	
										황나무		1주		"	"	
										가옥	브릭스레트	115.9㎡	영주시 영남구	김영순	"	
													사천동 651-7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편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651-13							가죽	목조스레트	24.7㎡	경주시 성명구 사천동 651-7	김영순	가·보상영토
									참고	목조스레트	16.4㎡			
									비닐하우스	정재	1동			
									보일러실	목조스레트	2.3㎡			
									지하수		1식			
									마당포장	보도블럭(8x4.5)	36.0㎡			
									원관암담양		6.6㎡			
									사과나무		3주			
									감나무		1주			
									배나무		7주			
									두릅나무		1주			
									무궁화나무		11주			
									밤나무		4주			
									대추나무		5주			
									단풍나무		1주			
									향나무		1주			
									외송나무		2주			
									복숭아나무		2주			
									감나무		2주			
59	사천동	465-2		전	76	76	국(건설후)	국						환경전

변동 전·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입권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번	성명	주소	성명	종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59	사전동	465-2	전	76	76	국(건설부)	국									변경후
60	사전동	465-3	도	63	63	사전동 420	김연우									변경전
60	사전동	465-3	도	63	63	정주시	국									변경후
61	사전동	465-4	전	3	3	사전동 420	김연우									변경전
61	사전동	465-4	전	3	3	정주시	국									변경후
62	사전동	651-11	구	312	312	국(농림부)	국									변경전
62	사전동	651-11	구	312	312	국(농림부)	국									변경후
63	사전동	470-1	전	1,068	1,068	국(건설부)	국									변경전
63	사전동	470-1	전	1,068	1,068	국(건설부)	국									변경후
64	사전동	651-8	전	384	384	국(행정경제부)	국									변경전
						가옥경장고	산관계사	비닐하우스	40.5 ㎡					사전동 651-8	이상복	
						옥추사	옥추사	황재슬레이트	64.1 ㎡					(011-492-0308)		
						지하수	지하수	목조슬레이트	8.4 ㎡							
						물타리	물타리	1식	1 EA							
						리일락	리일락	강관철조양	13.0 m							
						매화나무	매화나무	5-10년생	1 주							
						대추나무	대추나무	5-10년생	1 주							
						호두나무	호두나무	5-10년생	6 주							
						헤브	헤브	5-10년생	2 주							
						앵두나무	앵두나무	1.0*2.0	2.0 ㎡							
						앵두나무	앵두나무	5-10년생	2 주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연계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번	성명		주소	성명	종도	구조	수량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진동	468-1							창고	목조스래트	12.4㎡	영주시 상영구 사진동468-1	이영호	가보상표	
									가죽	목조스래트	12.8㎡		"	"	
									화장실	목조스래트	3.8㎡		"	"	
									축사바닥	콘크리트	236.4㎡		"	"	
									개장	목조	2.0㎡		"	"	
									진입로포장	콘크리트	57.5㎡		"	"	
									양장	조립식	10.0㎡		"	"	
									지하수		1식		"	"	
									경화조		1식		"	"	
									단감나무		1주		"	"	
									대추나무		1주		"	"	
									살구나무		1주		"	"	
									앵두나무		4주		"	"	
									소나무		1주		"	"	
									복숭아나무		1주		"	"	
									사철나무		2주		"	"	
									액화		2주		"	"	
									매화나무		1주		"	"	
									무궁화나무		1주		"	"	
									은행나무		1주		"	"	

변동 전·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토지소유자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비고	
	동	번지번				면적 (㎡)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공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 [대로1-12호선]												
	사천동	468-1				용이나무		1주	충주시 상당구 사천동469-1	이용호	가.보양장토	
						포도나무		2주		"	"	
						매실나무		1주		"	"	
66	사천동	651-12	51	국(농림부)								변경전
66	사천동	651-12	51	국(재정경제부)								변경후
67	사천동	469-1	1,190	충주시								변경전
			1,190			가목	블럭슬레이트	99.8㎡	사천동 469-1 (212-5736)	이용호		
						가목	블럭슬레이트	33.0㎡				
						축사	횡물슬레이트	117.9㎡				
						축사	목조슬레이트	99.0㎡				
						축사	목조슬레이트	198.3㎡				
						축사	목조슬레이트	60.0㎡				
						담장	목조슬레이트	7.0㎡				
						창고	목조슬레이트	12.4㎡				
						가각	목조슬레이트	12.8㎡				
						화장실	목조슬레이트	3.8㎡				
						축사바닥	콘크리트	236.4㎡				
						개집	목조	2.0㎡				
						진입로포장	콘크리트	57.5㎡				
						담장	조립식	10.0m				
						지하수	1식	1 EA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필지번				필지 면적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토1-12호선]																
69	사천동	469-3	전	2,609	2,609	국(건설효부)	국									변경후
70	사천동	518-7	전	945	819	경주시	국									변경전
									가옥	블럭슬레이트	57.0 ㎡		사천동 401-16 (211-1682)	박노성		
									속사	철골슬레이트	102.3 ㎡					
									창고	목조슬레이트	27.0 ㎡					
									창고	철골천막	6.0 ㎡					
									가각	목조슬레이트	5.3 ㎡					
									개집	목조슬레이트	12.8 ㎡		사천동 518 (212-2328)	김흥기	세입자	
									창고	목조슬레이트	6.0 ㎡					
									최정실	목조슬레이트	1.4 ㎡					
									지하수	1식	1EA					
									은행나무	5-10년생	73 주					
									영나무	5-10년생	3 주					
									삼나무	5-10년생	1 주					
									두릅나무	5-10년생	26 주					
									감나무	5-10년생	1 주					
									주목나무	5-10년생	1 주					
									무궁화	5-10년생	2 주					
									배나무	5-10년생	1 주					
									자두나무	5-10년생	2 주					
									대추나무	5-10년생	1 주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						원지번	용도	구조	수합	주소		
공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518-7							단층나무	5-10년생	1주	사천동 518 (212-2328)	김흥기	세민자
									취동나무	5-10년생	1주			
									노나무	5-10년생	1주			
									백합	5-10년생	1주			
70	사천동	518-7	전	945	945	청주시	국							변경후
71	사천동	652-5	도	585	585	국(건설부)	국							변경전
71	사천동	652-5	도	585	585	국(건설부)	국							변경후
72	사천동	518-9	전	627	507	청주시	국							변경전
72	사천동	518-9	전	627	627	청주시	국							변경후
73	사천동	484-2	전	377	377	국(건설교통부)	국							변경전
73	사천동	484-2	전	377	377	국(건설교통부)	국							변경후
74	사천동	518-6	전	327	327	우암동 380-13	이선경		사무실	콘테이너	18.0㎡	사천동 518-2 (212-4425)	이선경	변경전
74	사천동	518-6	전	327	327	청주시	국		사무실	콘테이너	18.0㎡	청주시 청양구 사천동 518-2	이선경	변경후
									창고	콘테이너	18.0㎡			
									창고	콘테이너	27.0㎡			
									주말및사무 실	조립식	151.3㎡			
									창고	철골철근콘크리트	121.0㎡			
									진명장	철골	2.0㎡			
									진명장	철골	9.0㎡			
									간판		1식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입건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					주 소	성 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518-6							지하수			1식	충주시 상당구 사천동 518-2	이선경	가보성로	
									정화조			1식		"	"	
									물방크		3톤	1식		"	"	
									개집		목조	6.2㎡		"	"	
									두릅나무			25주		"	"	
									관상수			1주		"	"	
									진입로설치			23.0m		"	"	
									울타리		철제출판	28.0m		"	"	
									울타리		철골 철조랑	43.0m		"	"	
									영양관		서용상사	1식		"	"	
75	사천동	518-8	전	180	180	우암동 380-13	이선경		창고		판테이너	18.0㎡	사천동 518-2 (212-4425)	이선경		변경진
									창고		판테이너	27.0㎡				
									창고		철골슬레이트	151.3㎡				
									창고		철골천막	121.0㎡				
									진열장		철골	2.0㎡				
									진열장		철골	9.0㎡				
									지하수		1식	1EA				
									정화조		1식	1EA				
									물방크		1식	3 ton				
									개집		목조	6.2㎡				

변동 전·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경물			건물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궐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518-8							두릅나무 진입로설치	토사	25 주 23.0 m	25 주 23.0 m	사천동 518-2 (212-4425)	이선경		
									물타리	철재철관	28.0 m	28.0 m				
									물타리	철골철조망	43.0 m	43.0 m				변경후
75	사천동	518-8	대	180	180	충주시	국									변경전
76	사천동	518-5	도	39	39	충주시	국									변경후
76	사천동	518-5	도	39	39	충주시	국									변경후
77	사천동	514-6	진	776	776	충주시	국		원두막 작업장 노티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단풍나무 작업장 지하수	목조슬레이트 비닐하우스 5-10년생 5-10년생 5-10년생 5-10년생 비닐하우스 1식	9.0㎡ 120.0㎡ 6 주 40 주 55 주 30 주 132.0㎡ 1 EA	9.0㎡ 120.0㎡ 6 주 40 주 55 주 30 주 132.0㎡ 1 EA	오양면동소리191-7 (217-1715) (011-718-6131)  봉양신동@706호 (011-461-5456)	김수환		변경전
77	사천동	514-6	진	776	776	충주시	국		작업장 노티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작업장	비닐하우스 6주 40주 55주	120.0㎡ 6주 40주 55주 132.0㎡	120.0㎡ 6주 40주 55주 132.0㎡	충원군 오창면 봉소리 101-7   충주시 동덕구 봉양동 김정현호@095706호	김수환 " " " 민병덕	가:보상자료 " " " 가:보상자료	변경후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입권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원지번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b>공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 [대로1-12호선]</b>															
78	사천동	514-3	전	155	155	국(건설부)	국		가옥				영주시 영양구 영양동 1641	이용만	변경 전
79	사천동	514-3	전	155	155	국(건설부)	국		창고 비닐하우스						변경 후
									창고 비닐하우스						
									창고 비닐하우스						
									창고 비닐하우스						
									창고 비닐하우스						
79	사천동	513-4	전	260	260	국(건설부)	국		화장실						변경 전
79	사천동	513-4	전	260	260	국(건설부)	국		개집						변경 후
									지허수						
									배나무						
									포도나무						
									꽃사과						
80	사천동	513-3	전	339	339	영주시	국		화장실					이용만	변경 전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지번				지번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513-3							개인	목조	3.8㎡	이물간			
80	사천동	513-3	전	339	339		정주시	국	지하수	1식	2 EA	이물간			평정전
81	사천동	511-2	전	102	102		국(건설부)	국	배나무	5-10년생	2 주				평정전
81	사천동	511-2	전	102	102		국(건설부)	국	꽃사과	5-10년생	3 주				평정후
82	사천동	510-5	전	352	352		국(건설부)	국							평정전
82	사천동	510-5	전	352	352		국(건설부)	국							평정후
83	사천동	510-2	전	137	26		국(건설부)	국							평정전
83	사천동	510-2	전	137	15		국(건설부)	국							평정후
84	사천동	509-2	전	90	57		국(건설부)	국							평정전
84	사천동	509-2	전	90	15		국(건설부)	국							평정후
85	사천동	652-4	도	162	14		국(건설부)	국							평정전
85	사천동	652-4	도	162	5		국(건설부)	국							평정후
86	사천동	511-3	전	230	230		정주시	국							평정전
86	사천동	511-3	전	230	230		정주시	국							평정후
87	사천동	510-4	답	431	431		정주시	국							평정전
87	사천동	510-4	답	431	431		정주시	국							평정후
88	사천동	509-5	전	502	502		국(건설부)	국							평정전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98	사천동	492-1	전	1,117	1,117	국(건설부)	국									변경후
99	사천동	506-2	전	116	116	충주시	국									변경전
99	사천동	506-2	전	116	116	충주시	국									변경후
100	사천동	506-3	전	402	402	충주시	국	강나무	5-10년생	250주		박영규	사천동 120			변경전
100	사천동	506-3	전	402	402	충주시	국	강나무		250주		박영규	충주시 흥덕구 무심동 성호@102동902호	가보상필로		변경후
101	사천동	502-6	제	40	40	국(건설부)	국									변경전
101	사천동	502-6	제	40	40	국(건설부)	국									변경후
102	사천동	502-5	전	33	33	국(건설부)	국									변경전
102	사천동	502-5	전	33	33	국(건설부)	국									변경후
103	사천동	502-7	전	504	504	충주시	국									변경전
103	사천동	502-7	전	504	504	충주시	국									변경후
104	사천동	502-3	전	76	76	사천동 496-3	이정일									변경전
104	사천동	502-3	전	76	76	충주시	국									변경후
105	사천동	502-4	전	436	436	사천동 496-3	이정일	기옥	블럭슬레이트	76.6㎡			사천동 401-3			변경전
								창고	블럭슬레이트	20.0㎡			(211-214)			
								창고	블럭슬레이트	8.0㎡			(011-459-3141)			
								보일러실	목조슬레이트	3.8㎡						
								차고	철골전막	17.5㎡						
								축사	블럭슬레이트	53.5㎡						
								축사	블럭슬레이트	48.9㎡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점물			건물 및 지점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필지번호				주 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 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502-4							개진	블럭슬레이트	17.5 ㎡		사천동 401-3	이정일	
									화장실	블럭슬레이트	2.0 ㎡		(211-2141)		
									대문	목조철관	1 식		(011-439-3141)		
									대문	철재	1 식				
									대문기둥	콘크리트	2 EA				
									가관	쇠시	10.6 ㎡				
									본재원	비닐하우스	45.0 ㎡				
									보일러	본재원	1 식				
									담장	조립식	46.0 m				
									파고라	철재	12.0 ㎡				
									마당	보도블럭	89.6 ㎡				
									진입로표지	보도블럭	99.0 ㎡				
									장독대	콘크리트	4.0 ㎡				
									화판	자연석	12.5 ㎡				
									상수도	1식	1 EA				
									지하수	1식	1 EA				
									주목나무	대	2 주				
									심나무	소	1 주				
									사철소나무	대	2 주				
											1 주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수용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편지번 면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건물명 지장물 소유자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502-4					소나무		소		1 주	이정일		
							짜구나무		대		1 주			
							단풍나무		중		2 주			
									대		8 주			
									소		3 주			
									분재		30 EA			
							견나무		묘목		7 주			
							참죽나무		대		3 주			
							회양목				1 주			
							오가피나무				1 주			
							두릅나무				950 주			
							다래덩굴				2 주			
							드릅덩굴				2 주			
							앵두나무				3 주			
							매실나무		대		1 주			
								소			2 주			
							깨끗나무		대		6 주			
							감나무		대		5 주			
								묘목			5 주			
							행자나무		묘목		2 주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입권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비고	
	동	원지번				관급지 번	지적 (㎡)		소유자 성명	용도	구조		수량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시원동	502-4											
									건물내	1주	1주	시원동 401-3	이정일
									리얼락	1주	1주	(211-2141)	
									해당화	1주	1주	(011-459-3141)	
									장미	3주	3주		
									매화	1주	1주		
									연산홍	1주	1주		
									목단	1주	1주		
									철쭉	3주	3주		
									벚꽃나무	6주	6주		
									개나리	1주	1주		
									작약	1주	1주		
									금당화	3주	3주		
									백합	1주	1주		
									상록	1주	1주		
									복주나	3주	3주		
									당금래	5주	5주		
									매발톱	3주	3주		
									세신	1주	1주		
									부채화	1주	1주		

변동 전·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역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지번				권리지 번	주 소		성 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502-4							서양국화 철남성 비비초 호랑이꽃 마유나무 공지 참나무 더덕 애나리과외수리			2주 2주 2주 1주	사천동 401-3 (211-2141) (011-459-3141)	이정일		
105	사천동	502-4	전	436	436		경주시	국	가옥 창고 창고 보일러실 차고 축사 축사	벽스레트 벽스레트 벽스레트 목조스레트 철골철암 벽스레트 벽스레트	76.6㎡ 20.0㎡ 8.0㎡ 3.8㎡ 17.5㎡ 53.5㎡ 48.9㎡	경주시 영명구 사천동 405-3	이정일 " " " " " "	가:보상권 " " " " " "	단경후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입권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점물			비고	
	동	원지번				번	성명		종도	구조	수량		지점물 소유자
	사진동	502-4											
									계 집	벽돌	17.5㎡	이정임	기.보상조치
									화장실	벽돌스레트	2.0㎡	"	"
									대문	목조편판	1식	"	"
									대문	철재	1식	"	"
									대문기둥	콘크리트	2식	"	"
									가죽	삿시	10.6㎡	"	"
									분채원	비닐하우스	45.0㎡	"	"
									보일러	분채원용	1식	"	"
									담장	조립식	46.0m	"	"
									파고라	철재	12.0㎡	"	"
									마당	보도블럭	89.6㎡	"	"
									진입로표장	보도블럭	99.0㎡	"	"
									장독대	콘크리트	4.0㎡	"	"
									화단	지연석	12.5㎡	"	"
									상수도	1식	1식	"	"
									지하수	1식	1식	"	"
									주목나무	2주	2주	"	"
									상나무	1주	1주	"	"
									상나무	2주	2주	"	"
									시월나무	대	1주	"	"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면적 (㎡)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광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502-4							소나무		1주	영주시 상영구 시안동 489-3	이정일	
									짜꾸나무	대	1주			
									짜꾸나무	중	2주			
									단풍나무	대	8주			
									단풍나무	소	3주			
									단풍나무 복 재		30ea			
									진나무		7주			
									황죽나무		3주			
									회양목		1주			
									오가피나무		1주			
									두릅나무		950주			
									대레나무		2주			
									두릅나무		2주			
									앵두나무		3주			
									매실나무	대	1주			
									매실나무	소	2주			
									개금나무		6주			
									감나무	대	5주			
									감나무	묘목	5주			
									뽕나무		2주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비고				
	동	원지번				면적지 번	주소		성명	종도	구조		수량	지장물 소유자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토1-12호선]																
	사천동	502-4							진달래			1주	영주시 상영구 시영동 495-3	이정일	가·포상장부	
									라일락			1주		"	"	"
									해당화			1주		"	"	"
									장미			3주		"	"	"
									애화나무			1주		"	"	"
									연신홍			1주		"	"	"
									목단			1주		"	"	"
									황포나무			3주		"	"	"
									철쭉분재			6ea		"	"	"
									버들나무			1주		"	"	"
									개나리			1주		"	"	"
									죽약			1주		"	"	"
									금단화			3주		"	"	"
									백합			1주		"	"	"
									상꽃			1주		"	"	"
									복주나			3주		"	"	"
									당글래			5주		"	"	"
									메밀꽃			3주		"	"	"
									세신			1주		"	"	"
									부채화			1주		"	"	"

변동 전·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	번 지번				번 지번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궤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전동	502-4							서양국회 철남성 비비초 호랑이꽃			2주 2주 2주 1주	청주시 청양구 사전동 496-3	이정일 " " " "	가.보상료 " " " "	
106	사전동	502-8	전	112	112	사전동 520	이정일									변경전
106	사전동	502-9	전	112	112	청주시	국									변경후
107	사전동	495-1	전	44	44	국(간설부)	국									변경전
107	사전동	495-1	전	44	44	국(간설부)	국									변경후
108	사전동	496-3	전	589	589	국(간설부)	국						사전동 496-3	김경인		변경전
									가족 참고 보일러실 현관 창고 비닐하우스 개집 담장 마당 마당 진입로포장 지하수			73.5㎡ 40.0㎡ 3.8㎡ 3.5㎡ 7.0㎡ 8.0㎡ 0.3㎡ 25.0㎡ 7.5㎡ 42.0㎡ 99.0㎡ 1식 1EA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지번				번지번	성명		종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 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시린동	496-3							상수도	1식	1EA	시린동 496-3	김정인		
									앵두나무	5-10년생	1주				
									자두나무	5-10년생	1주				
									은행나무	5-10년생	1주				
									대추나무	5-10년생	1주				
									개나리	5-10년생	13주				
									두릅나무	5-10년생	50주				
									배나무	5-10년생	1주				
									웃나무	5-10년생	2주				
									포도나무	5-10년생	2주				
									매화나무	5-10년생	2주				
									무궁화	5-10년생	5주				
									플라타너스	5-10년생	1주				
									꽃사과	5-10년생	1주				
									밤나무	5-10년생	1주				
									사철나무	5-10년생	1주				
									주목나무	5-10년생	3주				
									철쭉나무	5-10년생	1주				
108	시린동	496-3	권	589	589	국(건설부)	국		가옥	브릭스레트	73.5㎡	시린동 496-3	김정인	가보상표	변경후
									보행러닝	목조스레트	3.8㎡	시린동 496-3	"	"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건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비고
	동	원지번 권지번			지적 (㎡)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전동	496-3							원관	활재스레트	3.5㎡	김정인	가보상표		
								담장	조립식	25.0㎡	"	"		
								마당	반크리트	7.5㎡	"	"		
								마당	보도블럭	42.0㎡	"	"		
								진입로포장	보도블럭	99.0㎡	"	"		
								지하수		1식	"	"		
								상수도		1식	"	"		
								행두나무		1주	"	"		
								자두나무		1주	"	"		
								은행나무		1주	"	"		
								대추나무		1주	"	"		
								개나리		13주	"	"		
								두릅나무		50주	"	"		
								배나무		1주	"	"		
								웃나무		2주	"	"		
								포도나무		2주	"	"		
								매화나무		2주	"	"		
								무궁화나무		5주	"	"		
								프러티너스		1주	"	"		
								꽃시과		1주	"	"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 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전동	496-3								방나무		1주	영동 주민자치위원회 274-43 주요사항-114	김정인	가보상권	
										시철나무		1주	"	"	"	
										주목나무		3주	"	"	"	
										철쭉나무		1주	"	"	"	
109	사전동	496-4	전	75	75	운진동 546	류관득									변경 전
109	사전동	496-4	전	75	75	청주시	국									변경 후
110	사전동	497-11	전	96	80	청주시	국									변경 전
110	사전동	497-11	전	96	96	청주시	국									변경 후
111	사전동	497-10	전	645	395	청주시	국									변경 전
111	사전동	497-13	전	83	83	청주시	국									변경 후
	사전동	497-10	전	562	562	청주시	국									변경 후
112	사전동	497-9	전	415	415	청주시	국									623-15도 합병
113	사전동	497-8	대	219	219	청주시	국			교회	조각식슬레이트	153.5㎡	사전동 497-8	이병찬		변경 전
										가족	조각식슬레이트	57.8㎡	(211-0496)			
										창고	조각식슬레이트	15.4㎡				
										창고	블럭슬레이트	24.6㎡				
										화장실	블럭슬레이트	1.0㎡				
										피고라	강판	49.5㎡				
										대문	철재	1식				
										대문기둥	철재	2EA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원건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지번호				번	면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497-8							마당	보도블럭	72.3 ㎡	사천동 497-3	이병찬			
									진입로포장	보도블럭	99.0 ㎡	(211-0496)				
									상수도	1식	1 EA					
									경화조	1식	1 EA					
									철합	철관	8.0 m					
									간판	목조	1 식					
									담장	조립식	13.0 m					
									개진	목조	1.0 ㎡					
									등나무	5-10년생	2 주					
									향나무	5-10년생	1 주					
									장미	5-10년생	1 주					
									오동나무	5-10년생	1 주					
									박태기	5-10년생	4 주					
									무궁화	5-10년생	2 주					
									꽃사과	5-10년생	1 주					
									시월나무	5-10년생	1 주					
									복숭아나무	5-10년생	4 주					
									은행나무	5-10년생	1 주					
									배나무	5-10년생	1 주					
									죽순	5-10년생	2 주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입력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원지번				지번	성명		주소	성명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497-8							두릅나무	5-10년생	80주		사천동 497-3	이명진		
									메꽃나무	5-10년생	1주		(211-0496)			
									철쭉	5-10년생	1주					
									회양목	5-10년생	1주					
									앵두나무	5-10년생	1주					
									단풍나무	5-10년생	1주					
									단감나무	5-10년생	1주					
									버드나무	5-10년생	1주					
113	사천동	497-8	대	219	219		정주시	국	교회	조각조스레트	153.5㎡		정주시 영양구 사천동 497-3	이명진	가도상행로	
									가옥	조각조스레트	57.8㎡					
									창고	조각조스레트	15.4㎡					
									창고	조각조스레트	24.6㎡					
									화장실	브릭스레트	1.0㎡					
									대문	철재	1식					
									대문기둥	철재	2식					
									이랑	보도블럭	72.3㎡					
									진입로포장	보도블럭	99.0㎡					
									상수도		1식					
									경화조		1식					
									철타	철관	8.0m					

변동 전·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지번				번지번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공사명: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곽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사천동	497-8							간판	목재	1식	영주시 삼당구 서원동 497-3	이병진	기보상항표	
									담장	조립식	13.0m				
									개천	목조	1.0㎡				
									동나무		2주				
									노간주나무		1주				
									장미		1주				
									오동나무		1주				
									박태기나무		4주				
									무궁화나무		2주				
									꽃사과		1주				
									시철나무		1주				
									박송아나무		4주				
									은행나무		1주				
									배나무		1주				
									죽순나무		2주				
									두릅나무		80주				
									매화나무		1주				
									철쭉나무		1주				
									회양목		1주				
									행두나무		1주				







변동 전·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경물			건물 및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번지번				번지번	성명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143	-	-	-	-	-	-	-	-	-	-	-	-	-	-	변경진
143	사천동	500-8	전	457	457	청주시	국	-	-	-	-	-	-	-	변경후
144	-	-	-	-	-	-	-	-	-	-	-	-	-	-	변경진
144	사천동	500-12	전	99	99	청주시	국	-	-	-	-	-	-	-	변경후
145	-	-	-	-	-	-	-	-	-	-	-	-	-	-	변경진
145	사천동	528-4	도	7,989	6,426	청주시	국	-	-	-	-	-	-	-	변경후
146	-	-	-	-	-	-	-	-	-	-	-	-	-	-	변경진
146	사천동	573-12	도	290	181	청주시	국	-	-	-	-	-	-	-	변경후
147	-	-	-	-	-	-	-	-	-	-	-	-	-	-	변경진
147	사천동	573-13	전	127	127	청주시	국	-	-	-	-	-	-	-	변경후
148	-	-	-	-	-	-	-	-	-	-	-	-	-	-	변경진
148	사천동	573-10	전	231	231	청주시	국	-	-	-	-	-	-	-	변경후
149	-	-	-	-	-	-	-	-	-	-	-	-	-	-	변경진
149	사천동	503-3	도	160	100	청주시	국	-	-	-	-	-	-	-	변경후
150	-	-	-	-	-	-	-	-	-	-	-	-	-	-	변경진
150	사천동	503-4	전	83	83	청주시	국	-	-	-	-	-	-	-	변경후
151	-	-	-	-	-	-	-	-	-	-	-	-	-	-	변경진
151	사천동	504-7	도	263	136	청주시	국	-	-	-	-	-	-	-	변경후
152	-	-	-	-	-	-	-	-	-	-	-	-	-	-	변경진
152	사천동	504-10	전	58	58	청주시	국	-	-	-	-	-	-	-	변경후

공사명 : 무심동로(보성아파트~의궤순환도로)개설공사[대로1-12호선]











충주시공고 제2009 - 15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제피로스컨트리클럽진입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제피로스컨트리클럽진입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충 주 시 장

1. 도시계획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북 충주시 양성면 돈산리, 사미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제피로스컨트리클럽 진입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면적 : 10,997㎡
  - 규모 : B=12.0(7.0)m, L=872.0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충북 충주시 흥덕구 사창동 514 로드랜드건설
  - 성 명 : 주식회사 제피로스 대표자 김홍보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0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열람기간 : 2009. 2. 6 ~ 2009. 2. 27(21일간)
  - 장 소 : 충주시청 지역개발과
8. 기타 관련서류는 충주시청 지역개발과(☎850-611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관계인 조서(1)

영권 번호	소재지		지목	지 면 적 ㎡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돈산	362-14	전	154	13			국(건설부)			
2		146-1	답	78	36		168	김주현			
3		146-2	답	373	23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7-28 -202	이병노 외 1인			
							168	김주현			
4		147-4	답	420	420		168	김주현			
5		148-6	전	860	779		광주시 흥덕구 사창동 514 로드랜드건설	주식회사 제피로 스			
6		148-4	전	86	59			충청북도			
7		148-1	전	116	71			충청북도			
8		171-4	전	19	19		광주시 흥덕구 사창동 514 로드랜드건설	주식회사 제피로 스			
9		370	도	182	27			국(건설부)			
10		171-1	전	645	439		광주시 흥덕구 사창동 514 로드랜드건설	주식회사 제피로 스			
11		171	전	551	403		광주시 흥덕구 사창동 514 로드랜드건설	주식회사 제피로 스			
12		172	답	1,018	269		용인 기흥 마북629 삼거마 음삼성래미안1차 117-1603	김주현			
소 계				4,502	2,77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관계인 조서(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3	돈산	173	답	1,144	14	용인 기흥 마북629 상거마 을삼성래미안1차 117-1603	김주현			
14		362-11	제	43	19		국(건설부)			
15		362	천	69,374	26		국(건설부)			
16		181-2	천	601	157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514 로드랜드건설	주식회사 제피로 스			
17		182-2	답	380	376	168	김주현			
18		183	천	3,969	1,560		국(재무부)			
19		184	잉	69	69		국(재무부)			
20		364	도	3,063	270		국(재무부)			
21		177-5	천	929	359		국(재무부)			
15		177-6	천	1,250	325	경남 창원 상남동 44-1 대동아파트 114-1301	박광성 외 1인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514 로드랜드건설	주식회사 제피로 스			
16		175-5	천	1,372	148	서울 강남 개포 12 대치아파트 214-709	김선영 외 1인			
수 계				82,194	3,323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관계인 조서(3)

일련 번호	소재지		지역	지 적 ㎡	면 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6	탄산	175-5	천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514 로드랜드건설	주식회사 제피로 스			
17		175-14	천	1,353	703		국(재무부)			
18		175-13	담	1,792	563		국(재무부)			
19		366	구	264	168		국(농수산부)			
20	사미	336	구	291	205		국(농수산부)			
21		22	천	478	10		국(재정경제부)			
22		335	도	8,152	8		국(건설부)			
23	탄산	175-6	천	1,702	475	진해시 자은동 911 성원아파트 11-205	인회윤 외 1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514 로드랜드건설	주식회사 제피로 스			
24	사미	산7	임	6,347	77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01-8	김성겸 외 1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514 로드랜드건설	주식회사 제피로 스			
25		산9	임	6,347	180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1352	신경선			
소 계				26,726	2,389					



**충주시공고 제2009 - 165호**

**충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열람공고**

충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충 주 시 장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충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신니면사무소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6개소

**2.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사 업 명	노 선 명	위 치	사업규모
신니면사무소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소로2-8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89-6번지 일원	L=101m, B=8m
교현1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소로2-254	충주시 교현동 123-1번지 일원	L=158m, B=8m
	소로2-250	충주시 교현동 126-5번지 일원	L=104m, B=8m
	소로2-251	충주시 교현동 124-1번지 일원	L=159m, B=8m
수안보원지밀라옆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소로2-10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64-2번지 일원	L=130m, B=8m
봉방(하방·신촌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소로2-558	충주시 봉방동 317-5번지 일원	L=290m, B=8m
진주연립·예성운전학원간 도로확포장공사	중로3-34	충주시 호암동 627-1번지 일원	L=1,024m, B=12m

**3.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충주시장
- 주 소 : 충북 충주시 금릉동 700번지

**4.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0. 12. 31

5.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6.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열람기간 : 2009. 2. 6. ~ 2009. 2. 26.(21일간)
- 장 소 : 충주시청 도로과(8층)

7.기타 관련서류는 충주시청 도로과(043-850-6212)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청원군공고 제 2009 - 144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310-2번지 일원에 이븐데일 골프&리조트(18홀:회원제)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6일  
청 원 군 수

1.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의 요지

- 가. 사업시행지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310-2번지의 45필지
- 나.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 다. 사업의 명칭 및 규모

사업명	시설의 종류	면적	규모		
			용지구분	당 초	변 경
이븐데일 골프&리조트 (회원제 18홀)	체육시설 (골프장)	994,440㎡ (총면적 변경없이 구역경계 변경)	체육시설용지	319,253㎡	334,094㎡
			건축시설용지	16,004㎡	15,458㎡
			녹지시설용지	612,358㎡	593,614㎡
			기반시설용지	46,825㎡	51,274㎡

- 라.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기간 : 착수일 ~ 2009년 12월 31일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반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바. 사업시행자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번지 (주)경원실업 채남희
- 사. 공람내용 및 관련서류 : 생 략 (공람장소 비치)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가. 일 시 : 도보 게재일로부터 21일간
- 나. 장 소 : 청원군청 개발과(☎251-3432), 미원면사무소(☎251-5393)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이해관계 조서

NO.1

(단위 : m<sup>2</sup>)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단위	소유자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명칭	권리사항
	면	리				기정	변경		주소	주소		주소	주소		
1	미원	대신	310-2	전	1,560	1,560	1,560	m <sup>2</sup>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가9-1 (수원기림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근저당권	
2	"	"	310-3	전	638	638	638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가9-1 (수원기림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근저당권	
3	"	"	311	전	982	982	982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가9-1 (수원기림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근저당권	
4	"	"	312	답	4,612	4,612	4,612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가9-1 (수원기림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근저당권	
5	"	"	313	전	2,955	2,955	2,955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가9-1 (수원기림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근저당권	
6	"	"	369-3	전	3,296	3,296	3,296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가9-1 (수원기림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근저당권	
7	"	"	369-4	전	8,574	8,574	8,574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가9-1 (수원기림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근저당권	
8	"	"	369-8	전	3,327	3,327	3,327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가9-1 (수원기림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근저당권	
9	"	"	369-9	전	10,664	10,664	10,664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가9-1 (수원기림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근저당권	
10	"	"	369-10	전	2,885	2,885	2,885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가9-1 (수원기림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근저당권	
11	"	"	379-1	전	569	569	569	"		국(재무부)					
12	"	"	379-2	전	179	179	179	"		국(재무부)					
13	"	"	379-3	전	1,825	1,825	1,825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가9-1 (수원기림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근저당권	
14	"	"	387-1	목	3,151	-	22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423-1	원기선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8-7	청주축산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근저당권	
15	"	"	388-4	답	1,518	-	923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423-1	원기선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8-7	청주축산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근저당권	
16	"	"	391	답	499	499	499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가9-1 (수원기림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근저당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적정함.

(단위 : ㎡)

NO.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면	리				기적	번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7	미원	대신	392	답	1,798	1,798	1,798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3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18	"	"	392-1	전	52,155	52,155	52,155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19	"	"	393	천	833	833	833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20	"	"	394	임	945	945	945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21	"	"	산65-2	임	27,570	19,273	19,273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22	"	"	산65-4	임	43,636	10,753	10,753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23	"	"	산65-5	구	628	78	78	"	국(농림부)			
24	"	"	산67-2	임	152,727	119,078	119,078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25	"	"	산67-3	임	46,863	46,863	45,918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26	"	"	산67-8	목	19,838	19,838	19,838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27	"	"	산67-9	목	5,350	5,350	5,350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28	"	"	산67-10	목	74,812	74,812	74,812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29	"	"	산67-11	임	8,977	8,977	8,977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30	"	"	산67-12	목	89,979	89,979	89,979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31	"	"	산67-13	임	66,536	66,536	60,184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32	"	"	산67-14	목	39,963	39,963	39,963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사항함.

(단위 : m<sup>2</sup>)

NO.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성명	권리사항
	면	리				기정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3	미원	대신	산69	임	37,686	37,686	37,686	m <sup>2</sup>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34	"	"	산70	목	29,752	29,752	29,752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35	"	"	산70-2	목	30,000	30,000	30,000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36	"	"	산70-3	임	8,313	8,313	8,313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37	"	"	산72-1	임	19,041	19,041	19,041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38	"	"	산72-2	임	37,058	37,058	37,058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39	"	"	산72-3	임	786	786	786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40	"	"	산72-4	임	5,527	5,527	5,527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41	"	"	산72-6	임	430	430	430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42	"	"	산74	임	67,041	-	6,352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37-4	정상룡				
43	"	"	산78	임	59,107	59,107	59,107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44	"	"	산79	임	46,413	44,465	44,465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45	"	"	산81	임	100,736	100,736	100,736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46	"	"	산81-1	임	46,290	21,743	21,743	"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70	(주)경원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79-1 (수원기업금융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계					1,096,314	994,440	994,440	m <sup>2</sup>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작성함.

청원군공고 제2009 - 157호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

청원군공인조례 제9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제17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의거 재등록·폐기한 공인을 동 조례 제10조(공고)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청 원 군 수

1.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09. 2. 11.
2.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 2009. 2. 12.
3. 재등록 사유 : 직인 마멸에 따른 공인 신조

○신조 공인명 및 인영

신조공인명			폐기공인명		
공 인 명	글씨및규격	인 영	공 인 명	글씨및규격	인 영
청원군수의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3.0cm×3.0cm)		청원군수의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3.0cm×3.0cm)	

증평군 공고 2009 - 62호

## 공인 등록 공고

증평군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공인을 등록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증 평 군 수

1. 공인사용일 : 2009. 2. 6.
2. 사 유
  - 통합증명발급기 설치에 따른 등록
3. 신조 및 폐기 공인 인영

공 인 명	인 영	규 격 (cm)	글 씨	재 질	비 고
증평읍장인통합 증명발급기전용(1)		2.4×2.4	한글전서체	우레탄 (특수고무)	등록
증평읍장인통합 증명발급기전용(2)		2.4×2.4	한글전서체	우레탄 (특수고무)	등록

기 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0호

**금강수계 소옥지구 하천정비공사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88호(2007.08.03), 충청북도보 제2470호 및 고시 제2008-83호(2008.05.23), 충청북도보 제2511호로 하천공사시행(변경)계획 고시한 금강수계 소옥지구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붙임 조서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2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붙임 토지세목(변경)조서

○ 토지세목 (변경)조서

당초/일경 번호	소개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금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당초 11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산43	산43-1	임	25,983	35	573					
변경 11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산43	산43-1	임	25,983	35	573 573 573-1					
당초 22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303-2	303-10	답	516	22	서울 강남 서초동 1619-11					
변경 22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303-2	303-10	답	516	22	서울 강남 서초동 577-2					
당초 85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32-2	전필	답	678	678	옥천군 옥천읍 장아리 313 장 아리주공@ 101-806					
변경 85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32-2	전필	답	678	678	김천시 용두동 58-2					
당초 59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23	전필	답	251	251	임구동 204 임광호 204 임진용 206					
변경 59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23	전필	답	251	251	임구동(1/3) 204 임광호(1/3) 204 임진용(1/3) 206					
당초 81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31	전필	전	66	66	국전					
변경 81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31	전필	전	66	66	국전					
당초 80	옥천군 군서면 상동리	36	36-3	답	1,436	158	110					
변경 80	옥천군 군서면 상동리	36	36-3	답	1,436	158	100					
당초 145	옥천군 군서면 상동리	12	전필	전	129	129	68-9					
변경 145	옥천군 군서면 상동리	12	전필	전	129	129	68-9					
당초 14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산8-3	산8-7	임	15,332	510	서울시 중구 충무로47가 120- 3 진양아파트 914					
14-1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산8-3	산8-8	임	15,332	11	서울시 중구 충무로47가 120- 3 진양아파트 914					

당초/일정 변경 번호	소제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필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14 변경 번호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신8-3	신8-7	임	15,332	510	오정환	서울시 중구 홍무로4가 120-3 진영아파트 914	조성환	서울 금천구 시흥동 919-18	기업류	
		신8-3	신8-8	임	15,332	11	오정환	서울시 중구 홍무로4가 120-3 진영아파트 914	조성환	서울 금천구 시흥동 919-18	기업류	
13 변경 번호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76-3	76-4	천	423	29	이기환	173				
		76-3	76-5	천	423	40	이기환	173				
13-2 변경 번호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76-3	76-6	천	423	242	이기환	173				
		76-3	76-4	천	423	29	이규현	174-2				
13-1 변경 번호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76-3	76-5	천	423	40	이규현	174-2				
		76-3	76-6	천	423	242	이규현	174-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 - 33호

##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대전지방  
 청장

1. 공 사 명 : 괴산~연풍(2공구)도로 건설공사
2.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3. 노 선 명 : 국도 34 호선(당진~영덕)
4. 사용개시구간 :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568(구)부터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4(전)까지(L=8.63km)
5. 사용폐지구간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송덕리 895-1(도)부터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538-3(도)까지(L=10.3km) (구국도)
6. 중요경과지 : 괴산군 연풍면 입석리, 적석리
7. 전 용 구 간 :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568(구)부터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4(전)까지(L=8.63km)
8. 개 시 일 : 2009년 2월 3일
9. 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09 - 3호

## 공 인 폐 기 공 고

충청북도의회 공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하고 동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충청북도의회의장

1. 공인 폐기일 : 2009. 2. 6.
2. 공인 폐기사유 : 충청북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충청북도의회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3. 폐기공인 인영 : 1개

공인명	인 영
충청북도의회 댐 관련 대책 특별위원장인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09 - 52호**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

**1.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취지 및 이유**

- 남부지역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4월 개관예정인 남부 영어체험센터의 업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역교육청 교육과장 분장 업무에 "영어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4조 제3항 제28호)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용지를 세로 작성한 것)를 충청북도교육감(참조 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290-2557)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부. 끝.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8호에 "영어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4 장 지역교육청</p> <p>제1절 하부조직</p> <p>제24조(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교육청) (생략)</p> <p>① ~ ② (생략)</p> <p>③ 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7. (생략)</p> <p><u>&lt;신설&gt;</u></p>	<p>제 4 장 지역교육청</p> <p>제1절 하부조직</p> <p>제24조(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교육청) (현행과 같음)</p> <p>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7. (현행과 같음)</p> <p><u>28. 영어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u></p>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09 - 1호

충북개발공사 관인 공고

충북개발공사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개발공사 관인 현황]

인 장 명	인 영	신 조 일
충북개발공사 사장의인(인감)		2009년 2월2일

## 청송군 공고 제 2009 - 43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1항및같은법시행령제99조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2월 06일



군 수

## 1. 인가신청의 요지

가. 건 명 : 청송·진보 도시계획도로개설

나.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비고
청송도시계획도로(소로2-16호선, 백운장여관~문화예술회관)개설공사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841-1 ~ 청송읍 금곡리 1056-84	L=416.0m B= 8.0m	
청송도시계획도로(소로3-20호선, 장강랜드~한전 뒤)개설공사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453-13 ~ 청송읍 월막리 495-4	L=180.0m B= 6.0m	
진보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농촌공사~한라아파트)개설공사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536-8 ~ 진보면 각산리 622-115	L=100.0m B= 15.0m	
진보도시계획도로(소로3-8호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뒤)개설공사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521-19 ~ 진보면 각산리 622-90	L= 50.0m B= 6.0m	

##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9년 02월 05일 ~ 2009년 02월 27일(20일간)

나. 장 소 : 청송군 지역개발과

## 3. 의견제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청송군 지역개발과 도시담당 (전화 870-6341~3)으로 문의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